

# 래미안 포레스티지 입주자모집공고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보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래미안 포레스티지는 사이버 모델하우스(www.raemian.co.kr)로 운영함
  - 건보주택 방문은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만 가능하며, 인원은 기간별로 제한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후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은 당첨자 본인이 래미안 포레스티지 홈페이지(www.raemian.co.kr)를 통해 방문일자 및 시간 예약 후 방문하여야 하며, 예약일자 및 시간을 필히 준수하여야 함
  - 래미안 포레스티지 홈페이지에서 예약시 예약가능 대상자 여부는 당첨자발표시 한국부동산원에서 사업주체에게 송부한 당첨자의 성명 및 연락처(휴대전화)를 기준으로 판단함
- 건보주택 방문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됨
  - 건보주택 입장 전, 관람 또는 상담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열 화상카메라 및 체온측정기를 통한 체온이 37.5도 이상일 경우(당 건보주택에서 확인 기준)
  - 입장 시 손 소독제, 감염 확산 예방 조치(소독수 분사, 체온측정 등)에 불응 할 경우 - 최근 14일 이내 해외(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지역)에 체류한 경우
  - 기타 건보주택 운영자 및 관련 지침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건보주택 관람, 자격검증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예비입주자의 자격확인 서류제출, 동호수 추첨 및 공급계약일정은 향후 별도 고지할 예정입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주택공급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11.1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됨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12.31.(금)임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만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주택건설지역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및 금정구이나 관계법령에 따라 동래구청이 인허가 관청으로 부산광역시 동래구를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당첨자를 선정함
-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수도권외 비투기과열지구이나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됨 (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수도권외 비투기과열지구이나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됨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공공·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 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이나,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함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7년간

\* '20.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거 5년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31.) 현재 부산광역시는 물론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도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함.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함
- \*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지정 변경 고시 : 2019년 1월 29일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30호, 적용지역 : 부산광역시 일부지역(7개소)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부산진구, 수영구, 기장군(일광면에 한함)]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람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주택공급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	x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부산광역시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함  
다만,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지정 변경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30호)]에 의거하여 부산광역시 1년 미만(기타 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람.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고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함)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함.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됨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니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람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함. 또한, 가점제 제한 주택공급신청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람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주택공급신청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함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함.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raemian.co.kr)에 공개되고,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주택공급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함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함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식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점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점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함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청약과열지역인 부산광역시 동래구 및 금정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거래가액에 상관없이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함.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필히 제공해야 하며(사업주체와 계약자 간의 최초 계약에 대한 신고는 사업주체가 수행함),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의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함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최초로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2.01.24.)부터 아래 기간동안 전매가 금지됨 (단, 「주택법」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이중당첨 및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 자격 적격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 될 수 있음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본 아파트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자 또는 예비입주자로서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자,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자는 사후무순위 공급대상에서 제외됨(청약신청이 불가함)

■ 청약전 반드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청약제한사항 조회하시기 바라며, 주택공급신청자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신청 일정 등을 확인하시고,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중도금 대출관련 유의사항

-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동래구는 청약과열지역으로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중도금 대출 포함)시 LTV가 50%로 제한되며, 2주택이상 다주택 세대는 대출이 금지되며, 1주택 세대는 신규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존주택 처분 및 전입하여야 하고, 무주택세대는 신규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입하여야 하는 조건을 승낙하는 경우에 대출이 가능함. 그리고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개인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자체가 거부될 수 있음. 사업주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래미안 포레스티지 견본주택은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당사와 분양상당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 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됨.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당(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게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 사유로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시 계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조달하여 납부일정 및 납부금액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신중하게 계약에 임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는 확장형 기준 59A, 84A, 84C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으니,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주택형은 CG와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세대내부,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람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2020.0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함. 단,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제19조제4항 및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30호에 의거 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주택공급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해당	기타			
일 정	2022.01.13.(목)	2022.01.14.(금)	2022.01.17.(월)	2022.01.18.(화)	2022.01.24.(월)	2022.02.15.(화) ~ 2022.02.27.(일)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17:30)	인터넷 청약 (09:00~17:30)	인터넷 청약 (09:00~17:30)	인터넷 청약 (09:00~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래미안 포레스티지 견본주택</li>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래미안 포레스티지 견본주택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182번길 3)</li> </ul>

※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영업시간에만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람.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문제로 청약이 곤란한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 2021.11.16.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름

#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0 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동래구 건축과-62126(2021.12.2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00-13 번지 및 금정구 장전동 511-2 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6 층, 지상 35 층 36 개동 총 4,043 세대[조합 1,492 세대(보류지 52 세대 포함), 임대 220 세대] 중 아파트 일반분양 2,331 세대  
[특별공급 1,227 세대(일반[기관추천] 231 세대, 다자녀가구 233 세대, 신혼부부 463 세대, 노부모부양 69 세대, 생애최초 231 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4 년 09 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1. 공급대상

(단위 : m<sup>2</sup>, 세대)

주택 구분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 <sup>2</sup> )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비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1001007	01	049.9769	49	49.9769	25.5835	75.5604	37.2651	112.8255	27.0690	212	21		21		20	62	150	12
		02	059.9836A	59A	59.9836	26.5507	86.5343	44.7266	131.2609	31.0003	208	15	24	58	6	45	148	60	17
		03	059.9818B	59B	59.9818	28.9549	88.9367	44.7253	133.6620	31.8610	59	12	5	12	3	5	37	22	2
		04	059.9835C	59C	59.9835	26.9619	86.9454	44.7266	131.6720	31.1476	45	5	6	10	1	10	32	13	2
		05	059.9808D	59D	59.9808	28.7799	88.7607	44.7246	133.4853	31.7979	29	2	2	9	1	5	19	10	1
		06	072.9138A	72A	72.9138	29.2193	102.1331	54.3681	156.5012	36.5885	35	4	3	7	1	7	22	13	6
		07	072.9792B	72B	72.9792	29.1997	102.1789	54.4168	156.5957	36.6049	80	8	10	25	2	15	60	20	4
		08	072.9792C	72C	72.9792	29.4439	102.4231	54.4168	156.8399	36.6924	43	4	4	8	2	8	26	17	2
		09	072.7828D	72D	72.7828	28.8907	101.6735	54.2704	155.9439	36.4238	48	4	6	15	2	8	35	13	2
		10	072.7218E	72E	72.7218	29.2822	102.0040	54.2248	156.2288	36.5422	32	4	3	8	1	7	23	9	1
		11	084.9849A	84A	84.9849	32.8312	117.8161	63.3689	181.1850	42.2068	467	47	54	87	15	35	238	229	31
		12	084.9840B	84B	84.9840	33.0597	118.0437	63.3682	181.4119	42.2883	201	20	20	40	7	10	97	104	6
		13	084.9963C	84C	84.9963	32.7064	117.7027	63.3773	181.0800	42.1662	473	47	54	90	14	30	235	238	15
		14	084.9736D	84D	84.9736	33.0532	118.0268	63.3604	181.3872	42.2823	133	13	13	25	6	10	67	66	4
		15	084.9936E	84E	84.9936	32.7612	117.7548	63.3754	181.1302	42.1848	220	22	25	42	7	13	109	111	9
		16	084.9836F	84F	84.9836	33.1531	118.1367	63.3678	181.5045	42.3217	33	3	3	6	1	3	16	17	1
		17	097.7331	97	97.7331	30.0177	127.7508	72.8745	200.6253	45.7658	8	-	1	-	-	-	1	7	8

	18	115.9982	115	115.9982	35.2939	151.2921	86.4939	237.7860	54.1993	2	-	-	-	-	-	-	2	-
	19	132.5750	132	132.5750	51.7106	184.2856	98.8543	283.1399	66.0190	3	-	-	-	-	-	-	3	-
합 계										2,331	231	233	463	69	231	1,227	1,104	123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기하여 합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최하층 우선 배정세대(123 세대)는 일반분양 총공급세대(2,331 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이며, 97 타입의 경우 일반분양(8 세대) 모두 1층(최하층)세대로 최하층 우선배정과 무관하게 1층으로 배정됨

※ 59, 72, 84타입의 경우 기존 승인 및 설계도서 상 표기방식을 청약홈 시스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변경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람

▪ 59A1→59A, 59A2→59B, 59B1→59C, 59B2→59D ▪ 72A1→72A, 72A2→72B, 72A3→72C, 72B1→72D, 72B2→72E ▪ 84A1→84A, 84A2→84B, 84B1→84C, 84B2→84D, 84C1→84E, 84C2→84F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사이버 모델하우스, 견본주택 및 분양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m<sup>2</sup>) × 0.3025 또는 공급면적(m<sup>2</sup>)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에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표시 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登記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관리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 63 조 제 1 항 제 6 호에 의거 건축시설의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그 대지소유권이 주어지되, 추후 확정측량에 의거 대지면적 변경 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다음 소수점자리에서 버림방식 차이로 인하여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서) 주택형	049.9769	059.9836A	059.9818B	059.9835C	059.9808D	072.9138A	072.9792B	072.9792C	072.7828D	072.7218E	084.9849A	084.9840B	084.9963C	084.9736D	084.9936E	084.9836F	097.7331	115.9982	132.5750
견본주택등 약식표기	49	59A	59B	59C	59D	72A	72B	72C	72D	72E	84A	84B	84C	84D	84E	84F	97	115	132

## 2.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주택형 (약식표기)	동·라인	층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1 차(10%)	2 차(10%)	3 차(10%)	4 차(10%)	5 차(10%)	6 차(10%)	입주 지정일			
								2022.06.30.	2022.11.17.	2023.03.16.	2023.07.20.	2023.10.19.	2024.02.15.				
49	203 동 1,2,3,4,5,6 호 204 동 1,2,3,4,5,6 호	2 층	12	102,550,000	190,450,000	293,000,000	29,300,000	29,300,000	29,300,000	29,300,000	29,300,000	29,300,000	29,300,000	29,300,000	29,300,000	87,900,000	
		3 층	12	107,100,000	198,900,000	306,000,000	30,600,000	30,600,000	30,600,000	30,600,000	30,600,000	30,600,000	30,600,000	30,600,000	30,600,000	30,600,000	91,800,000
		4 층	12	110,600,000	205,400,000	316,000,000	31,600,000	31,600,000	31,600,000	31,600,000	31,600,000	31,600,000	31,600,000	31,600,000	31,600,000	31,600,000	94,800,000
		5~9 층	58	112,000,000	208,000,000	320,000,000	32,000,000	32,000,000	32,000,000	32,000,000	32,000,000	32,000,000	32,000,000	32,000,000	32,000,000	32,000,000	96,000,000
		10~19 층	91	113,750,000	211,250,000	325,000,000	32,500,000	32,500,000	32,500,000	32,500,000	32,500,000	32,500,000	32,500,000	32,500,000	32,500,000	32,500,000	97,500,000
		20~28 층	27	115,500,000	214,500,000	330,000,000	33,000,000	33,000,000	33,000,000	33,000,000	33,000,000	33,000,000	33,000,000	33,000,000	33,000,000	33,000,000	99,000,000

59A	102 동 1,2,3,4 호 103 동 1,3,4,5 호 206 동 1,3,4,5 호 304 동 1,2,3,4 호	2 층	16	166,250,000	308,750,000	475,0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142,500,000	
		3 층	15	171,850,000	319,150,000	491,0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147,300,000
		4 층	16	175,350,000	325,650,000	501,0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150,300,000
		5~9 층	72	177,450,000	329,550,000	507,000,000	50,700,000	50,700,000	50,700,000	50,700,000	50,700,000	50,700,000	50,700,000	50,700,000	152,100,000
		10~19 층	56	179,200,000	332,800,000	512,0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153,600,000
		20~27 층	23	180,950,000	336,050,000	517,0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155,100,000
	304 동 5 호	2 층	1	158,900,000	295,100,000	454,0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136,200,000
		3 층	1	164,500,000	305,500,000	470,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141,000,000
		4 층	1	168,350,000	312,650,000	481,0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144,300,000
		5~9 층	5	170,100,000	315,900,000	486,0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145,800,000
10~19 층		2	172,200,000	319,800,000	492,0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147,600,000	
59B	303 동 1,3 호	2 층	2	170,800,000	317,200,000	488,0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146,400,000
		3 층	2	176,400,000	327,600,000	504,0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151,200,000
		4 층	2	180,250,000	334,750,000	515,0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154,500,000
		5~9 층	10	182,350,000	338,650,000	521,0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156,300,000
		10~19 층	20	184,100,000	341,900,000	526,0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157,800,000
		20~29 층	17	186,200,000	345,800,000	532,0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159,600,000
		30~33 층	6	187,950,000	349,050,000	537,0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161,100,000
59C	103 동 2 호 206 동 2 호	2 층	2	163,800,000	304,200,000	468,000,000	46,800,000	46,800,000	46,800,000	46,800,000	46,800,000	46,800,000	46,800,000	46,800,000	140,400,000
		3 층	2	169,750,000	315,250,000	485,0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145,500,000
		4 층	2	173,250,000	321,750,000	495,0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148,500,000
		5~9 층	10	175,350,000	325,650,000	501,0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150,300,000
		10~19 층	20	177,100,000	328,900,000	506,0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151,800,000
		20~26 층	9	178,850,000	332,150,000	511,0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153,300,000
59D	303 동 2 호	2 층	1	167,300,000	310,700,000	478,000,000	47,800,000	47,800,000	47,800,000	47,800,000	47,800,000	47,800,000	47,800,000	47,800,000	143,400,000
		3 층	1	173,250,000	321,750,000	495,0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148,500,000
		4 층	1	177,100,000	328,900,000	506,0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151,800,000
		5~9 층	5	178,850,000	332,150,000	511,0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153,300,000
		10~19 층	10	180,950,000	336,050,000	517,0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155,100,000
		20~29 층	7	182,700,000	339,300,000	522,0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156,600,000
		30~33 층	4	184,450,000	342,550,000	527,0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158,100,000
72A	201 동 1,3 호 202 동 1,2 호 307 동 1,3 호	1 층	1	196,000,000	364,000,000	560,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168,000,000
		2 층	5	202,650,000	376,350,000	579,0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173,700,000



		3 층	6	209,300,000	388,700,000	598,000,000	59,800,000	59,800,000	59,800,000	59,800,000	59,800,000	59,800,000	59,800,000	179,400,000	
		4 층	6	213,850,000	397,150,000	611,0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183,300,000
		5~9 층	17	215,950,000	401,050,000	617,0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185,100,000
72B	101 동 1,2 호 302 동 1,2 호	2 층	4	202,650,000	376,350,000	579,0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173,700,000
		3 층	4	209,300,000	388,700,000	598,000,000	59,800,000	59,800,000	59,800,000	59,800,000	59,800,000	59,800,000	59,800,000	59,800,000	179,400,000
		4 층	4	213,850,000	397,150,000	611,0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183,300,000
		5~9 층	20	215,950,000	401,050,000	617,0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185,100,000
		10~19 층	28	218,400,000	405,600,000	624,000,000	62,400,000	62,400,000	62,400,000	62,400,000	62,400,000	62,400,000	62,400,000	62,400,000	187,200,000
		20~28 층	20	220,500,000	409,500,000	630,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189,000,000
72C	305 동 1,3 호	1 층	1	196,700,000	365,300,000	562,000,000	56,200,000	56,200,000	56,200,000	56,200,000	56,200,000	56,200,000	56,200,000	56,200,000	168,600,000
		2 층	1	203,350,000	377,650,000	581,0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174,300,000
		3 층	2	210,000,000	390,000,000	60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180,000,000
		4 층	2	214,200,000	397,800,000	612,000,000	61,200,000	61,200,000	61,200,000	61,200,000	61,200,000	61,200,000	61,200,000	61,200,000	183,600,000
		5~9 층	9	216,650,000	402,350,000	619,0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185,700,000
		10~19 층	16	218,750,000	406,250,000	625,0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187,500,000
		20~29 층	10	220,850,000	410,150,000	631,000,000	63,100,000	63,100,000	63,100,000	63,100,000	63,100,000	63,100,000	63,100,000	63,100,000	189,300,000
		30~34 층	2	223,300,000	414,700,000	638,000,000	63,800,000	63,800,000	63,800,000	63,800,000	63,800,000	63,800,000	63,800,000	63,800,000	191,400,000
72D	201 동 2 호 307 동 2 호	1 층	1	189,700,000	352,300,000	542,0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162,600,000
		2 층	2	196,000,000	364,000,000	560,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168,000,000
		3 층	2	202,650,000	376,350,000	579,0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173,700,000
		4 층	2	207,200,000	384,800,000	592,0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177,600,000
		5~9 층	10	209,300,000	388,700,000	598,000,000	59,800,000	59,800,000	59,800,000	59,800,000	59,800,000	59,800,000	59,800,000	59,800,000	179,400,000
		10~19 층	19	211,400,000	392,600,000	604,0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181,200,000
		20~29 층	10	213,500,000	396,500,000	610,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183,000,000
		30~31 층	2	215,950,000	401,050,000	617,0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185,100,000
72E	305 동 2 호	1 층	1	190,050,000	352,950,000	543,0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162,900,000
		2 층	1	196,700,000	365,300,000	562,000,000	56,200,000	56,200,000	56,200,000	56,200,000	56,200,000	56,200,000	56,200,000	56,200,000	168,600,000
		3 층	1	203,350,000	377,650,000	581,0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174,300,000
		4 층	1	207,900,000	386,100,000	594,000,000	59,400,000	59,400,000	59,400,000	59,400,000	59,400,000	59,400,000	59,400,000	59,400,000	178,200,000
		5~9 층	5	210,000,000	390,000,000	60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180,000,000
		10~19 층	10	212,100,000	393,900,000	606,000,000	60,600,000	60,600,000	60,600,000	60,600,000	60,600,000	60,600,000	60,600,000	60,600,000	181,800,000
		20~29 층	8	214,200,000	397,800,000	612,000,000	61,200,000	61,200,000	61,200,000	61,200,000	61,200,000	61,200,000	61,200,000	61,200,000	183,600,000
		30~35 층	5	216,650,000	402,350,000	619,0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185,700,000

84A	104 동 1,3,4 호	1 층	14	231,350,000	429,650,000	661,000,000	66,100,000	66,100,000	66,100,000	66,100,000	66,100,000	66,100,000	66,100,000	198,300,000	
	105 동 1,3,4 호														
	106 동 1,2 호	2 층	32	239,050,000	443,950,000	683,000,000	68,300,000	68,300,000	68,300,000	68,300,000	68,300,000	68,300,000	68,300,000	204,900,000	
	107 동 1,3 호														
	108 동 1,3,4 호														
	109 동 1,2,4 호	3 층	38	246,400,000	457,600,000	704,000,000	70,400,000	70,400,000	70,400,000	70,400,000	70,400,000	70,400,000	70,400,000	211,200,000	
	110 동 1 호														
	111 동 1 호														
	112 동 1 호														
	201 동 4 호	4 층	38	251,650,000	467,350,000	719,0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215,700,000	
205 동 1,3 호															
207 동 1,3 호	5~9 층	180	254,100,000	471,900,000	726,000,000	72,600,000	72,600,000	72,600,000	72,600,000	72,600,000	72,600,000	72,600,000	72,600,000	217,800,000	
208 동 4 호															
209 동 1,2,4 호															
210 동 1,3 호	10~19 층	114	256,900,000	477,100,000	734,000,000	73,400,000	73,400,000	73,400,000	73,400,000	73,400,000	73,400,000	73,400,000	73,400,000	220,200,000	
211 동 1 호															
212 동 1 호															
214 동 1 호	20~29 층	44	259,350,000	481,650,000	741,000,000	74,100,000	74,100,000	74,100,000	74,100,000	74,100,000	74,100,000	74,100,000	74,100,000	222,300,000	
305 동 4 호															
307 동 4 호															
308 동 1 호	30~35 층	7	261,800,000	486,200,000	748,000,000	74,800,000	74,800,000	74,800,000	74,800,000	74,800,000	74,800,000	74,800,000	74,800,000	224,400,000	
309 동 1 호															
310 동 1 호															
84B	106 동 4 호 208 동 1,3 호 213 동 1,3 호 306 동 1,3 호	1 층	4	231,700,000	430,300,000	662,000,000	66,200,000	66,200,000	66,200,000	66,200,000	66,200,000	66,200,000	66,200,000	198,600,000	
		2 층	6	239,400,000	444,600,000	684,000,000	68,400,000	68,400,000	68,400,000	68,400,000	68,400,000	68,400,000	68,400,000	68,400,000	205,200,000
		3 층	7	247,100,000	458,900,000	706,0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211,800,000
		4 층	7	252,000,000	468,000,000	720,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216,000,000
		5~9 층	35	254,800,000	473,200,000	728,000,000	72,800,000	72,800,000	72,800,000	72,800,000	72,800,000	72,800,000	72,800,000	72,800,000	218,400,000
		10~19 층	61	257,250,000	477,750,000	735,000,000	73,500,000	73,500,000	73,500,000	73,500,000	73,500,000	73,500,000	73,500,000	73,500,000	220,500,000
		20~29 층	55	259,700,000	482,300,000	742,000,000	74,200,000	74,200,000	74,200,000	74,200,000	74,200,000	74,200,000	74,200,000	74,200,000	222,600,000
30~35 층	26	262,150,000	486,850,000	749,000,000	74,900,000	74,900,000	74,900,000	74,900,000	74,900,000	74,900,000	74,900,000	74,900,000	224,700,000		
84C	104 동 2 호	1 층	4	224,350,000	416,650,000	641,000,000	64,100,000	64,100,000	64,100,000	64,100,000	64,100,000	64,100,000	64,100,000	192,300,000	
	105 동 2 호														
	107 동 2 호	2 층	10	232,050,000	430,950,000	663,000,000	66,300,000	66,300,000	66,300,000	66,300,000	66,300,000	66,300,000	66,300,000	198,900,000	
108 동 2 호															
109 동 3 호															
110 동 2 호	3 층	18	239,750,000	445,250,000	685,000,000	68,500,000	68,500,000	68,500,000	68,500,000	68,500,000	68,500,000	68,500,000	205,500,000		



97	111 동 3 호	1 층	8	264,950,000	492,050,000	757,000,000	75,700,000	75,700,000	75,700,000	75,700,000	75,700,000	75,700,000	75,700,000	227,100,000
	112 동 3 호													
	211 동 3 호													
	212 동 3 호													
	214 동 3 호													
	308 동 3 호													
	309 동 3 호													
310 동 3 호														
115	111 동 4 호	6 층	1	343,700,000	638,300,000	982,000,000	98,200,000	98,200,000	98,200,000	98,200,000	98,200,000	98,200,000	98,200,000	294,600,000
	309 동 4 호	24 층	1	350,350,000	650,650,000	1,001,000,000	100,100,000	100,100,000	100,100,000	100,100,000	100,100,000	100,100,000	100,100,000	300,300,000
132	110 동 2 호	1 층	3	314,650,000	584,350,000	899,000,000	89,900,000	89,900,000	89,900,000	89,900,000	89,900,000	89,900,000	89,900,000	269,700,000
	211 동 2 호													
	308 동 2 호													

###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임
- 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분양금액, 이하 같음)은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포함) 등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형은 건축비 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 품목 미포함 금액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 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명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분양계약(전매 포함)체결 등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및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상기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단, 그 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상기 중도금 납부기준 공정시점 이후 납입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사용검사일 이후 약정된 잔금일에 납부해야 함.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함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신용상의 문제 및 대출규제 등으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미납시 연체료 부과됨)
- 당첨자 및 당첨 부적격자에 대한 업무는 시공자(삼성물산 주식회사)가 대행함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Ⅱ.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1.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 세대수

구 분		49	59A	59B	59C	59D	72A	72B	72C	72D	72E	84A	84B	84C	84D	84E	84F	97	115	132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1	7	6	3	1	2	4	2	2	2	20	8	20	5	9	2	-	-	-	104	
	의사상자	-	-	-	-	-	-	-	-	-	-	1	-	1	-	-	-	-	-	-	2	
	장기복무 제대군인	1	1	1	-	-	1	1	-	1	-	2	1	2	1	-	-	-	-	-	12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부산	-	1	1	-	-	-	-	-	-	-	2	2	3	1	2	-	-	-	-	12
		장애인	울산	6	2	1	1	-	-	1	-	-	5	2	5	1	3	-	-	-	-	28
			경남	-	-	-	-	-	-	-	-	-	-	1	-	1	-	-	-	-	-	-
	중소기업 근로자	-	-	-	-	-	-	-	-	-	-	-	1	1	1	1	1	-	-	-	5	
	중소기업 근로자	2	4	3	1	1	-	2	2	2	1	1	14	6	13	4	7	1	-	-	-	62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1	-	-	-	-	1	-	-	-	-	-	1	-	1	-	-	-	-	-	-	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24	5	6	2	3	10	4	6	3	3	54	20	54	13	25	3	1	-	-	233	
신혼부부 특별공급	21	58	12	10	9	7	25	8	15	8	8	87	40	90	25	42	6	-	-	-	46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6	3	1	1	1	2	2	2	2	1	15	7	14	6	7	1	-	-	-	69	
생애최초 특별공급	20	45	5	10	5	7	15	8	8	7	7	35	10	30	10	13	3	-	-	-	231	
합 계		62	148	37	32	19	22	60	26	35	23	238	97	235	67	109	16	1	-	-	1,227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국가유공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에서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포함)함.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주택공급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함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포함)함.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주택공급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함

### 2.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 분	내 용																				
<p>1 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p> <p>무주택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 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li> <li>•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li>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하고, 예비입주자는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li> </ul> </li> </ul> <p>-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단,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취득 대상 토지등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 가능)</p> <p>-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b>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공급신청자</li> <li>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li> <li>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ul> </li> <li>※ 무주택 요건의 기준은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를 참조하시기 바람</li> </ul>																				
<p>청약자격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li>-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li>※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청약예금의 예치금액]</b></p> <table border="1" data-bbox="342 1098 2063 1302"> <thead> <tr> <th>구분</th> <th>부산광역시</th> <th>울산광역시</th> <th>경상남도</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이하</td> <td>300 만원</td> <td>250 만원</td> <td>200 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이하</td> <td>600 만원</td> <td>400 만원</td> <td>300 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이하</td> <td>1,000 만원</td> <td>700 만원</td> <td>400 만원</td> </tr> <tr> <td>모든 면적</td> <td>1,500 만원</td> <td>1,000 만원</td> <td>500 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용면적 85㎡이하	300 만원	250 만원	200 만원	전용면적 102㎡이하	600 만원	400 만원	300 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1,000 만원	700 만원	400 만원	모든 면적	1,500 만원	1,000 만원	500 만원
구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용면적 85㎡이하	300 만원	250 만원	200 만원																		
전용면적 102㎡이하	600 만원	400 만원	300 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1,000 만원	700 만원	400 만원																		
모든 면적	1,500 만원	1,000 만원	500 만원																		

※ 건본주택에서 특별공급 청약 접수를 하는 경우[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에 한함] 공급유형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 시간(10:00~14:00)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 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 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또는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 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3. 특별공급별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231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호(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2호의2(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3호(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 제4호(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5호(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6호(참전유공자), 제7호(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제8호(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에 한함), 제8호의2(도시재생 부지제공자)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이 불가함(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 추천기관

구분	추천기관	구분	추천기관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	장애인	부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울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경상남도청 장애인복지과
의사상자	부산광역시청 복지정책과	중소기업 근로자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부산광역시청 창조도시과

- **당첨자 선정방법** [참고] 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233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주택공급신청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고, 그 자녀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접수 시 배점표에 자필 작성 및 점수 기재)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 (1)	40	미성년 자녀 5 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 명	35	
		미성년 자녀 3 명	30	
영유아 자녀수 (2)	15	자녀 중 영유아 3 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 명	10	
		자녀 중 영유아 1 명	5	
세대구성 (3)	5	3 세대 이상	5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31.) 현재로부터 과거 3 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주택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 3 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 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무주택 기간 (4)	20	10 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주택공급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 년 이상 10 년 미만	15	
		1 년 이상 5 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 기간 (5)	15	10 년 이상	15	주택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지역(부산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 년 이상 10 년 미만	10	
		1 년 이상 5 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 (6)	5	10 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 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269 호(2018.05.08.)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따름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 463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인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함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 수가 같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함
-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030,160원	7,094,205원	7,094,205원	7,393,647원	7,780,023원	8,162,39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030,161원 ~ 7,236,192원	7,094,206원 ~ 8,513,046원	7,094,206원 ~ 8,513,046원	7,393,648원 ~ 8,872,376원	7,780,024원 ~ 9,333,628원	8,162,400원 ~ 9,794,879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030,161원 ~ 8,442,224원	7,094,206원 ~ 9,931,887원	7,094,206원 ~ 9,931,887원	7,393,648원 ~ 10,351,106원	7,780,024원 ~ 10,889,232원	8,162,400원 ~ 11,427,35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236,193원 ~ 9,648,256원	8,513,047원 ~ 11,350,728원	8,513,047원 ~ 11,350,728원	8,872,377원 ~ 11,829,835원	9,333,629원 ~ 12,444,837원	9,794,880원 ~ 13,059,838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8,442,225원~	9,931,888원~	9,931,888원~	10,351,107원~	10,889,233원~	11,427,360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648,257원~	11,350,729원~	11,350,729원~	11,829,836원~	12,444,838원~	13,059,839원~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여야 함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첨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 및 성년인 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임(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ul> </li> </ul>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46호(2021.11.16.)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따름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세대수의 3% 범위) : 69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로서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6호 적용 제외)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주택공급신청자가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주택공급신청자에게 있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69호(2018.05.08.)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따름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231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가구\*
    -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 이하 같음] 기준의 160% 이하인 자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이하	7,839,208원	9,222,467원	9,222,467원	9,611,741원	10,111,430원	10,611,119원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초과 ~ 160%이하	7,839,209원 ~ 9,648,256원	9,222,468원 ~ 11,350,728원	9,222,468원 ~ 11,350,728원	9,611,742원 ~ 11,829,835원	10,111,431원 ~ 12,444,837원	10,611,120원 ~ 13,059,838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인 가구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9,648,257원~	11,350,729원~	11,350,729원~	11,829,836원~	12,444,838원~	13,059,839원~
		160%이하	~9,648,256원	~11,350,728원	~11,350,728원	~11,829,835원	~12,444,837원	~13,059,838원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648,257원~	11,350,729원~	11,350,729원~	11,829,836원~	12,444,838원~	13,059,839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임(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head> <tr> <th>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ul> </li> <li>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45호(2021.11.16.)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따름

**4. 특별공급 당첨자 및 동·호수 결정 방법 및 유의사항**

구분	내 용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li> <li>•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동일 주택형의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예비입주자 포함)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li> <li>• 특별공급 주택공급신청자가 없거나 주택공급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li> </ul>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선정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b>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주택형별 전체 주택공급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b>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li> <li>• 예비입주자 선정(순번 포함)은 당첨자 발표시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에서 “당첨사실조회” 개별조회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함</li> <li>•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추첨에 불참시 예비 입주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관련 사항은 일반 예비입주자 처리 사항을 준용함.</li> </ul>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 가능 (단, 2018.12.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내 무주택이어야 함. 다만, 부칙(국토교통부령 제 565 호, 2018.12.11.) 제 5 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특례에 따라 혼인기간 내 주택 소유 시 2018.12.11. 전 처분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경과시 2순위 해당)</li> <li>•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원 전체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청약 신청 가능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 조(9 호 제외)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봄)</li> <li>•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9 조 및 제 50 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해당 신청일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함</li> <li>• 인터넷 청약(청약 Home)의 경우 서류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견본주택 방문 접수 시에는 특별공급 유형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함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참조)</li> <li>•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음. 방문접수(견본주택)시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주택공급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li> <li>•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4 조, 제 58 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향후 신청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li> </ul>

	<p>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예비대상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됨</li> <li>•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 세대 1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 세대 1 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 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 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li> <li>• 청약시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잘못된 신청에 대한 책임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건본주택 청약(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함)시 신청 접수된 서류는 수정이 불가하며 반환하지 않음</li> <li>•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현장접수)의 경우 제출 및 작성한 서류한 내용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li> <li>•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li> <li>•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 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7 조 제 8 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7 일) 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 년, 수도권외 6 개월, 위축지역 3 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li> <li>•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연락처 변경시 래미안 포레스티지 건본주택에 우선으로(T.051-867-4043)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주체에서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력한 연락처로 연락을 할 수 밖에 없어, 연락처를 잘못 기입한 예비입주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li> <li>•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li> <li>•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 및 "안내 동영상"을 활용하시기 바람</li> </ul>
--	--

###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1.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내 용
일반공급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 19 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부산광역시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함. 다만,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지정 변경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30호)]에 의거하여 부산광역시 1년 미만(기타 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야 함</li> <li>※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청약과열지역으로 1순위 청약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li> <li>-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li> <li>-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li> </ul> </li> <li>※ 단, 동일 순위에서 경쟁 발생시 부산광역시 1년 이상(2020.12.31.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시 부산광역시 1년 미만,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에게 공급함</li> </ul>
청약신청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li> <li>•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li> <li>•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 인 1 건만 신청 가능)하며, 1 인 2 건이상 신청시 모두 부적격 처리함</li> <li>•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li> <li>•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li> <li>•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li> <li>•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li> <li>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li> <li>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li> <li>④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li> </ul> </li> <li>• 점수 입력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주택공급신청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 신청 시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있음</li> <li>-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주택공급신청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 접수를 받으므로 주택공급신청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 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li> <li>- 청약신청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li> <li>-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제외함)]</li> </ul> </li> <li>•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 및 "안내 동영상"을 활용하시기 바람</li> </ul>
--	---

## 2.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거주구분	순위	신청구분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1 순위	전용면적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75%, 추천제 25% 적용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천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 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청약저축에 가입해서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ul>
		2 순위	전용면적 85㎡초과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초과 : 가점제 30%, 추천제 70% 적용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천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저축에 가입해서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li>•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li> </ul>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지정 변경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30호)]에 의거 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2020.12.31.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부산광역시 1년 미만,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는 기타 지역으로 청약신청하여야 하오니, 청약 신청시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구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용면적 85 m <sup>2</sup> 이하	300 만원	250 만원	200 만원
전용면적 102 m <sup>2</sup> 이하	600 만원	400 만원	300 만원
전용면적 135 m <sup>2</sup> 이하	1,000 만원	700 만원	400 만원
모든 면적	1,500 만원	1,000 만원	500 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기준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 [별표 1의 1호]

구분	내 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p> <p>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함.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 16 조 또는 제 17 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함. 이하 별표에서 같음) 중 2007년 9월 1일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함)</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 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 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 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p>
② 부양 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함</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직계존속</li> <li>-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 12 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 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li> </ul> <p>※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 53 조제 6 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60 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3) 주택공급신청자의 30 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li> </ul> <p>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 직계비속이거나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30 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 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li> <li>- (만 30 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 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li> </ul>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3 조제 4 항 및 제 53 조에 따름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 [별표 1의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①무주택기간	32	만 30 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 년 이상~9 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li> <li>•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li> <li>•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 30 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li> </ul>
		1 년 미만	2	9 년 이상~10 년 미만	20	
		1 년 이상~2 년 미만	4	10 년 이상~11 년 미만	22	
		2 년 이상~3 년 미만	6	11 년 이상~12 년 미만	24	
		3 년 이상~4 년 미만	8	12 년 이상~13 년 미만	26	
		4 년 이상~5 년 미만	10	13 년 이상~14 년 미만	28	
		5 년 이상~6 년 미만	12	14 년 이상~15 년 미만	30	
		6 년 이상~7 년 미만	14	15 년 이상	32	
②부양가족수	35	0 명	5	4 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초본 ※ 주소, 변동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등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함</li> <li>•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li> <li>• 만 18 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 18 세 이상 ~ 만 30 세 미만 : 자녀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및 출입국사실증명 (2) 만 30 세 이상 : 자녀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출입국사실증명 및 주민등록표초본(주소변동포함)</li> <li>• 주민등록표등본에 3 년 이상 등재된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직계존속의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속 전원 : 출입국사실증명 및 주민등록표초본(주소변동포함)</li> </ul>
		1 명	10	5 명	30	
		2 명	15	6 명 이상	35	
		3 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 개월 미만	1	8 년 이상~9 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li> </ul>
		6 개월 이상~1 년 미만	2	9 년 이상~10 년 미만	11	
		1 년 이상~2 년 미만	3	10 년 이상~11 년 미만	12	
		2 년 이상~3 년 미만	4	11 년 이상~12 년 미만	13	
		3 년 이상~4 년 미만	5	12 년 이상~13 년 미만	14	
		4 년 이상~5 년 미만	6	13 년 이상~14 년 미만	15	
		5 년 이상~6 년 미만	7	14 년 이상~15 년 미만	16	
		6 년 이상~7 년 미만	8	15 년 이상	17	

		7년 이상~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함 (위반시 부적격 처리됨)

### 3.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선정방법

구분	내 용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 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 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li> <li>•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 순위 주택공급신청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나머지 25%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li> <li>- 전용면적 85㎡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나머지 7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li> </ul> </li> <li>*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li> <li>3. 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li> </ol> </li> <li>•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1년이상 계속 거주신청자가 부산광역시 1년미만,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함</li> <li>•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li> </ul>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6 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주택공급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함</li> <li>•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li> <li>- 2 순위 : 1 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li> </ul> </li> <li>•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li> <li>• 예비입주자 선정(순번 포함)은 당첨자 발표시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당첨사실조회" 개별조회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함</li> <li>•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추첨에 불참시 예비 입주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예비입주자 관련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6 조를 준용함</li> </ul>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 시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주택공급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li> <li>• 인터넷 청약(청약 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서류는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당첨자격 확인기간에 사업주체 앞으로 제출하시기 바람</li> <li>•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7 조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한 날부터 일정기간(7 일) 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b>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b>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li> <li>•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li> <li>•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연락처 변경시 래미안 포레스티지 건본주택에 유선으로(T.051-867-4043)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주체에서는 예비입주자로</li> </ul>

선정된 자가 입력한 연락처로 연락을 할 수 밖에 없어, 연락처를 잘못 기입한 예비입주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 및 "안내 동영상"을 활용하시기 바람

##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1. 신청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 대상자		거주구분	신청 일자	신청 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2022.01.13.(목) (인터넷 : 09: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li>• 래미안 포레스티지 견본주택</li> <li>-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182번길 3, 3층</li> </ul>
일반공급	1 순위	해당지역	부산광역시 1년 이상 (2020.12.31. 이전부터 계속 거주)	2022.01.14.(금)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li> <li>-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함</li> </ul>
		기타지역	부산광역시 1년 미만,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2022.01.17.(월) (09:00~17:30)		
	2 순위	해당지역	부산광역시 1년 이상 (2020.12.31. 이전부터 계속 거주)	2022.01.18.(화) (09:00~17:30)		
		기타지역	부산광역시 1년 미만,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람.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됨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 : 영업시간에만 가능)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주택공급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2. 특별공급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서류 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		특별공급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본인	[건본주택 비치] ※ 청약홈으로 청약한 경우 특별공급신청서 생략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발급기준 : 본인 발급용 / • 발급용도 : 특별공급 신청용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이 가능하나, 대리인 위임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주택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발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청약홈으로 청약한 경우 생략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 조제 5 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발급기간 : 주택공급신청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가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10년 이상 군복무 기간 명시)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①, ② 모두 반드시 제출) ※ 유학,연수,관광,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출입국사실증명원	세대원 및 미성년자녀	• 세대원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 확인 ※ 발급기간 : 제출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기관추천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사업주체에게 통보한 추천명부로 접수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본인	[건본주택 비치] 배점기준표 작성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3 세대구성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상 본인과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 년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하여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지 5 년이 경과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자녀	• 만 18 세 이상~만 19 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증명서류 [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건본주택 비치] 임신중인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련 증명서류	본인 또는 배우자	• 자녀가 입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 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과거 자격변동 사항이 전부 표기되어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표시로 발급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입증서류' 참조] (또한,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증명서류 [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건본주택 비치] 임신중인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련 증명서류	본인 또는 배우자	• 자녀가 입양인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세대원	[건본주택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본인 및 만 19 세이상 세대원 전원 소득이 없는 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점산정기준표	본인	[건본주택 비치] 가점산정기준표 작성
	○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존·비속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발급기간 : 직계 존·비속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개명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주택공급신청자(세대주이어야 함)와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여부 확인
		○		자녀	• 만 30 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 30 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한 경우
		○		자녀	• 만 18 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만 18 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주택공급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등재된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 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과거 자격변동 사항이 전부 표기되어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표시로 발급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 주택공급신청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통산하여 5 개년도 이상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참조]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또한,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세대원	[건본주택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본인 및 만 19 세이상 세대원 전원 소득이 없는 자
제 3 자 대리인 신청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며,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위임장	본인	[건본주택 비치] 주택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 발급기준 : 본인 발급용 / 용도 :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대리인	[건본주택 비치] 대리인 개인정보수집	

※ 상기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31.)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건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 원칙으로 인터넷으로 신청한 주택공급신청자에 한하여 상기 구비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상기 서류 외에 사업주체가 당첨자 자격확인을 위해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상기 소득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음
-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 소득입증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자영업자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당직장/세무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및 해당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5개년도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근로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 모집공고일 기준 연말정산하지 않은 전년도 소득세납부 증빙이 필요할 시 2)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년도 소득세납부 증빙이 필요할 시	㉠ 세무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신고자용),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 2개서류 모두제출	㉠ 세무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 모집공고일 기준 연말정산하지 않은 전년도 소득세납부 증빙이 필요할 시 2)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년도 소득세납부 증빙이 필요할 시	㉠ 세무서 ㉡ 해당직장

- ※ 상기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음
-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해당년도 모두)하여야 함
-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경우 직인 날인 불필요)
- ※ 소득세납부 입증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 입증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 부동산 소유 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등기부등본 (*부동산 소유 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등기소(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포함) ㉢ 행정복지센터



	추가 (해당자)	㉔ 공동(개별)주택공시가격 확인원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㉕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㉖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 결과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 시가표준액조회 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㉔ 행정복지센터 ㉕ 행정복지센터 ㉖ 위택스(www.wetax.go.kr)
'부동산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㉗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㉗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주택소유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 1 호와 제 2 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2 의 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3 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 의 3. 제 2 조 제 7 호의 2 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3 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 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 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m<sup>2</sup>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 52 조 제 3 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 5 조 제 3 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 호 또는 2 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함
  6. 만 60 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 52 조 제 3 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 7696 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 8 조 및 제 9 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9. 소형·저가주택등을 1 호 또는 1 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 28 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 27 조제 5 항 및 제 28 조제 10 항제 1 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함)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에서 주택공급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람

한국부동산원(주 은행 주택공급신청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청약홈에서는 주택공급신청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음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 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주택공급신청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함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 ⇒ 「APT 청약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주택공급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함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 「세대구성원 동의」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주택공급신청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 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li> <li>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ul> ※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작성하시기 바람		
	제 3 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50%;">인감증명 방식</th> <th style="width:50%;">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 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li> <li>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주택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인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li> <li>주택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 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신청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 통</li> <li>주택공급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 통</li> <li>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 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li> <li>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주택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인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li> <li>주택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 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신청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 통</li> <li>주택공급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 통</li> <li>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청약 시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주택공급신청자에게 있음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체결

### 1. 일정 및 계약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검수	계약체결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22.01.24.(월)</li> <li>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li> <li>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li> <li>*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 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22.01.26.(수)~ 2022.01.30.(일) 10:00~17:00</li> <li>2022.02.03.(목)~ 2022.02.10.(목) 10:00~17:00</li> <li>장소 : 래미안 포레스티지 건분주택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 182 번길 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22.02.15.(화)~ 2022.02.27.(일) 10:00~17:00</li> <li>장소 : 래미안 포레스티지 건분주택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 182 번길 3)</li> </ul>
일반공급	1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 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2 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가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 인터넷청약이 불가하여 건분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람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 당첨자 중 부적격 통보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적격자임을 확인한 후 계약체결하며, 부적격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부적격 사유가 없는 당첨자가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미계약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 ※ 당첨자는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검수 기간에 당첨자적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세대별 가상계좌)로 계약금을 전부 납부하고, '계약 시 구비서류' 및 추가사항(전자수입인지 등)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 예비입주자의 경우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 및 계약체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반분양세대수의 20%내외(주택형별로 비율은 상이할 수 있음)의 범위에 해당하는 예비순번자를 대상으로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검수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해당되는 예비입주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개별통지할 예정임
-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검수는 당첨자 계약체결 시 적격여부 확인 및 계약체결 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일정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람, 분리세대 당첨자의 경우 주택소유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일정에 필히 참석하시기 바람. 또한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검수 기간에 미참석 시 당첨자 또는 부적격자로 관리될 수 있으며, 당첨된 청약통장의 계좌 부활이 불가할 수 있음
- ※ 당첨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2 조 및 제 54 조에 의거 사업주체가 서류접수일로부터 7년동안 보관하고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함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주택공급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쏘 은행 주택공급신청자)
이용기간		2022.01.24.(월) ~ 2022.02.02.(수)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 앱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2.01.24.(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주택공급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함

###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함

### 2.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검수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동 기본서류	○		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본인	[건본주택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발급기준 : 본인 발급용 / • 발급용도 : 당첨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은 인증된 서명도 가능, 대리인 위임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주택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 조제 5 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발급기간 : 주택공급신청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가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10년 이상 군복무 기간 명시)
	○	무주택 소명자료	해당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 건축물대장등본(발급용으로 발급), 주택공시가격확인원 등
	○	당첨사실 소명서류	해당자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①, ② 모두 반드시 제출)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임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출입국사실증명원	세대원 및 미성년자녀	• 세대원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 확인 ※ 발급기간 : 제출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특별공급	"특별공급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 로 대체함 ※ '공통기본서류' 및 '해외근무자(단신부임)'와 중복되는 서류는 추가 제출 불필요			
일반공급	○	가점산정기준표	본인	• 가점제 당첨자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그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자녀	• 만 30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자녀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존·비속	• 가점제 당첨자는 필수 제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발급기간 : 직계 존·비속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기존 1주택 처분서약 자료	해당주택	• 처분서약한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	

대리인 방문시 구비서류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며,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위임장	본인	[견본주택 비치] 주택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 발급기준 : 본인 발급용 / 용도 : 당첨자격확인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대리인	[견본주택 비치] 대리인 개인정보수집	

※ 상기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31.) 이후 발행 분에 한하며, 인터넷으로 신청한 주택공급신청자에 한하여 상기 구비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상기 서류 외에 사업주체가 당첨자 자격확인을 위해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3. 계약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		계약금(무통장입금증)	-	• 세대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무통장입금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서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본인	• 해당 세대의 공급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한 전자수입인지 ※ 전자수입인지 금액 : ①공급금액 1 억원 초과~10 억원 이하 : 150,000 원      ②공급금액 10 억을 초과하는 경우 : 350,000 원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은 인증된 서명도 가능, 대리인 위임 불가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의 총 실제거래가격(⑨번) 항목의 합계금액과 일치해야 함
대리인 계약시 구비서류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며,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위임장	-	[견본주택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
	○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서명 또는 날인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대리인	[견본주택 비치] 대리인용(개인정보수집안내)

※ 상기 계약 시 구비서류는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검수가 완료되고 당첨자격이 적격으로 확인된 분에 한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31.)이후 발행분이어야 함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분은 당첨자 자격 확인이 완료된 후 상기 계약 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함

### • 계약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계약자)에게 귀속됨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원, 거주지역, 거주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부적격 당첨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하여 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인지세법」제 3 조 제 1 항 제 1 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 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분양계약(전매 포함)체결 등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및 세제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 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2 조 제 3 항 및 제 57 조 제 8 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6 조 제 1 항부터 및 제 3 항 및 제 26 조의 2 조 제 1 항부터 제 3 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도 남은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9 조 제 5 항에 따라 공급함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9 조 제 5 항에 따라 공급하고도 남은 물량은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음)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9 조에 준함

#### 4.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BNK 부산은행	113-2015-7677-08	은천 4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 상기계좌는 전체 분양대금 관리계좌로서,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시 별도 생성되어 고지될 예정이니,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 지정된 세대별 가상계좌로 중도금, 잔금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 상기 관리계좌와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5.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가능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지정된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셔야 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대출 불가사유로 공급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중도금대출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동래구 및 금정구는 청약과열지역으로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중도금 대출 포함)시 LTV가 50%로 제한되며, 2주택이상 다주택 세대는 대출이 금지되며, 1주택 세대는 신규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존주택 처분 및 전입하여야 하고, 무주택세대는 신규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입하여야 하는 조건을 승낙하는 경우에 대출이 가능함. 그리고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개인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용이 축소되거나 대출자체가 거부될 수 있음. 사업주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10%) 완납 및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대출 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세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 대출은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 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만 해당)은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115 주택형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규제(분양가 9억원 초과) 대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통한 중도금 집단대출은 불가하며, 계약자가 직접 중도금을 조달하여 납입하여야 함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주체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이전이라도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중도금 대출 협약에 따라 중도금 1차~5차(50%)에 해당하는 대출금액에 대하여 해당대출의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입주지정기간 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를 포함) 최초일 전일까지 발생하는 중도금대출 이자는 사업주체(은천 4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가 납부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함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준공 후 소유권 이전등기 및 대출은행의 1순위(제 2 금융권에서 추가대출을 받은 경우 제 2 금융기관의 2 순위 포함) 근저당 설정 시까지 해당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음



## VI. 추가 선택품목

### □ 추가 선택품목

#### ■ 발코니 확장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품목	공급금액	
		입면분할 일반 이중창	입면분할 시스템(거실,침실) 이중창
49	발코니 확장 (안방 앞 및 일부 발코니 제외)	10,400,000	12,200,000
59A		15,500,000	18,400,000
59B		15,500,000	18,400,000
59C		16,300,000	19,300,000
59D		16,300,000	19,300,000
72A		17,200,000	20,500,000
72B		17,200,000	20,500,000
72C		17,200,000	20,500,000
72D		17,200,000	20,500,000
72E		17,200,000	20,500,000
84A		19,800,000	23,800,000
84B		19,800,000	23,800,000
84C		22,600,000	26,900,000
84D		22,600,000	26,900,000
84E		22,600,000	26,900,000
84F		22,600,000	26,900,000
97		22,200,000	26,500,000
115		27,600,000	33,700,000
132		32,500,000	39,500,000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배관포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선택형	설치위치 및 수량	공급금액	
			무풍형	무풍+공기청정형
49	선택 1	거실+안방 (2개소)	3,470,000	3,960,000
	선택 2	거실+안방+침실(3개소)	5,110,000	5,845,000
59A, 59B, 59C, 59D	선택 1	거실+안방 (2개소)	3,670,000	4,160,000
	선택 2	거실+안방+침실1+침실2 (4개소)	7,010,000	7,990,000
72A, 72B, 72C, 72D, 72E	선택 1	거실+안방 (2개소)	3,910,000	4,400,000
	선택 2	거실+안방+침실1+침실2 (4개소)	7,100,000	8,080,000
84A, 84B, 84C, 84D, 84E, 84F	선택 1	거실+안방 (2개소)	4,140,000	4,630,000
	선택 2	거실+안방+침실1+침실2 (4개소)	7,710,000	8,690,000
97	선택 1	거실+주방+안방 (3개소)	6,210,000	6,945,000
	선택 2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6개소)	11,070,000	12,540,000
115	선택 1	거실+주방+안방 (3개소)	6,220,000	6,955,000
	선택 2	거실+주방+안방/서재 통합 (3개소)	6,420,000	7,155,000
	선택 3	거실+주방+안방/서재 통합+침실1+침실2+침실3(6개소)	11,660,000	13,130,000
	선택 4	거실+주방+안방+서재+침실1+침실2+침실3 (7개소)	12,920,000	14,635,000
132	선택 1	거실1+주방+안방 (3개소)	6,210,000	6,945,000
	선택 2	거실1+거실2+주방+안방+침실1+침실2 (6개소)	11,690,000	13,160,000

■ 빌트인 가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공급금액			
	빌트인 전기오븐	3 구 쿡탑(하이브리드)	빌트인 김치냉장고	현관 공기청정 시스템
적용가능 타입	전 타입	전 타입	59 ~ 132타입 적용 [ ※ 49타입 제외 ]	전 타입
금액	860,000	380,000	1,640,000	1,300,000

■ 공간/가구(현관 중문, 침실 불박이장, 안방 슬라이딩장, 침실3 슬라이딩도어, 안방/서재 통합, 드레스룸 고급화)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공급금액					
	현관 중문	침실 불박이장	안방 슬라이딩장	침실3 슬라이딩도어	안방/서재 통합	드레스룸 고급화
적용가능 타입	전 타입	전 타입(침실1 적용) [※단, 49타입 침실, 72E, 132타입만 침실2 적용]	59 ~ 132타입 적용 [ ※ 49,115타입 제외 ]	97, 115타입 적용	115타입 적용	115타입 적용
49	1,720,000	720,000	—	—	—	—
59A	1,540,000	950,000	4,750,000	—	—	—
59B	1,540,000	950,000	4,750,000	—	—	—
59C	1,770,000	950,000	4,750,000	—	—	—
59D	1,770,000	950,000	4,750,000	—	—	—
72A	1,770,000	950,000	4,950,000	—	—	—
72B	1,770,000	950,000	4,950,000	—	—	—
72C	1,770,000	950,000	4,950,000	—	—	—
72D	1,770,000	950,000	3,280,000	—	—	—
72E	1,770,000	950,000	3,280,000	—	—	—
84A	1,790,000	1,030,000	5,340,000	—	—	—
84B	1,790,000	1,030,000	5,340,000	—	—	—
84C	1,790,000	1,030,000	3,220,000	—	—	—
84D	1,790,000	1,030,000	3,220,000	—	—	—
84E	1,790,000	1,030,000	5,140,000	—	—	—
84F	1,790,000	1,030,000	5,140,000	—	—	—
97	1,920,000	1,040,000	5,160,000	1,510,000	—	—
115	1,940,000	1,040,000	—	1,570,000	1,090,000	6,860,000
132	1,790,000	1,220,000	3,220,000	—	—	—

■ 마감재(대형타일 아트월, 주방가구 고급화, 엔지니어드 스톤 주방벽체, 글라스 현관가구, 원목마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공급금액					
	대형타일 아트월	주방가구 고급화 (플랩장, 가구마감, 미드웨이 선반)	엔지니어드 스톤 주방벽체		글라스 현관가구 [ ①브라운 ②화이트 중 택 1 ]	원목마루 [ ①오크, ②그레이, ③브라운 중 택 1 ]
적용가능 타입	전 타입	전 타입	전 타입		전 타입	전타입
			비확장시	확장시		
49	4,500,000	780,000	1,040,000	1,040,000	170,000	11,200,000
59A	4,100,000	1,890,000	260,000	1,060,000	460,000	13,900,000
59B	4,100,000	1,890,000	260,000	1,060,000	460,000	13,900,000
59C	5,100,000	1,050,000	320,000	830,000	570,000	14,300,000
59D	5,100,000	1,050,000	320,000	830,000	570,000	14,300,000
72A	5,200,000	1,450,000	350,000	960,000	570,000	17,400,000
72B	5,200,000	1,450,000	350,000	960,000	570,000	17,400,000
72C	5,200,000	1,450,000	350,000	960,000	570,000	17,400,000
72D	7,200,000	1,450,000	350,000	960,000	700,000	16,700,000
72E	7,200,000	1,450,000	350,000	960,000	700,000	16,700,000
84A	5,900,000	1,780,000	370,000	1,100,000	570,000	19,900,000
84B	5,900,000	1,780,000	370,000	1,100,000	570,000	19,900,000
84C	7,700,000	1,650,000	310,000	1,030,000	730,000	19,700,000
84D	7,700,000	1,650,000	310,000	1,030,000	730,000	19,700,000
84E	5,800,000	1,500,000	340,000	1,020,000	730,000	19,500,000
84F	5,800,000	1,500,000	340,000	1,020,000	730,000	19,500,000
97	7,800,000	1,860,000	450,000	1,200,000	750,000	21,800,000
115	9,800,000	2,130,000	600,000	1,250,000	910,000	28,500,000
132	6,200,000	1,640,000	310,000	1,040,000	720,000	29,300,000

■ IoT(LED 감성조명, IoT 스마트화장대)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공급금액(예정)	
	LED 감성조명(거실, 안방, 각 침실)	IoT 스마트화장대
적용가능 타입	전 타입	72~132타입 적용 [ 49, 59A, 59B, 59C, 59D타입 제외 ]
49	320,000	—
59A	530,000	—
59B	530,000	—
59C	530,000	—
59D	530,000	—
72A	560,000	1,790,000
72B	560,000	1,790,000
72C	560,000	1,790,000
72D	560,000	1,890,000
72E	560,000	1,890,000
84A	560,000	1,790,000
84B	560,000	1,790,000
84C	560,000	1,860,000
84D	560,000	1,860,000
84E	560,000	1,830,000
84F	560,000	1,830,000
97	650,000	1,960,000
115 거실+안방+서재+침실 3 개소	720,000	1,800,000
115 거실+안방/서재(통합형)+침실 3 개소		
132	730,000	2,040,000

■ 추가 선택품목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p>발코니 확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li> <li>· 발코니 확장금액은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li> <li>·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및 확장면적 등 세부사항은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li> <li>· 발코니 확장 선택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형 냉매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창호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인접세대가 발코니 비확장 세대인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천장 돌출, 벽체 돌출, 우물천장 디자인 변경, 조명 위치 변경, 일부 배관 노출 등의 마감 상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특히 72A, 84A, 84B타입의 경우 인접세대가 발코니 비확장일 경우 드레스룸 시스템 가구의 크기, 구성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창호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며, 향후 구조 검토등에 의해 창호 및 도어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난간,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li> <li>· 발코니 확장 선택시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동, 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깊이 및 천장고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li> <li>· 발코니 확장 선택시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창호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발코니 확장 선택시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안방, 다용도실, 132타입 침실2 등) 외부창호는 단창 또는 그릴 등으로 설치되며 내·외부 온도차에 의한 결로 및 결빙에 의해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발코니 확장 선택세대의 경우 상부세대 비확장 시 천장부위의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커튼박스/등박스/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시스템 에어컨(유상흡선) 설치위치 등이 축소/변경 될 수 있으며, 바닥 판넬히팅 구조는 확장형 기준층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li> <li>·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외부 샷시가 설치되지 않으며, 일반난간대(철재 투시형)가 설치됨</li> <li>·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확장형 세대와 비교시 상대적으로 출거나 결로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보일러, 세탁기 및 배관등의 동결로 인한 파손이 우려되므로 입주시 제공되는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li> <li>· 기본형(비확장) 및 확장 세대의 비확장 발코니 일부(인접세대 접면)에는 단열재가 설치되어 있으며 임의로 이를 파손해서는 안됨</li> <li>·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장에 덕트 및 연도,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li> <li>·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침실 문 사이즈가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li> <li>·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가구 및 발코니 선반 사이즈 및 위치가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li> <li>·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li> <li>· 입면분할 창호는 거실, 안방(115타입 해당), 안방 발코니에 적용됨</li> <li>· 발코니 확장 시 전동식 빨래건조대가 설치됨</li> </ul>
<p>천장형 시스템 에어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유상흡선 상품 미선택 시 벽부형 냉매배관이 기본 제공됨 [거실(132㎡타입은 거실1), 안방 - (2개소)]</li> <li>·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세대별/평형별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임</li> <li>· 제품 단종 시 동등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 시공됨</li> <li>· 115타입의 경우 안방/서재 통합 옵션 선택 시 안방 에어컨의 냉방용량은 상향되어 설치됨</li> <li>·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판매가는 기본제공 벽부형 냉매배관 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임</li> <li>· 실외기 설치 시 세대 설치 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li> <li>·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무상A/S 기간은 준공 후 3년이며, 소비자 과실로 인한 A/S는 유상 처리됨</li> <li>·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입주 시점이 아닌 공정상 해당 단지 내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는 시점에 맞춰 생산된 제품이 시공됨</li> <li>·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천장마감공사 전 실내기 설치가 선행되는 품목으로, 설치된 제품의 제조년월이 입주시점과 상이할 수 있음</li> <li>·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됨</li> <li>·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li> <li>·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실내기 시공개소 및 위치는 세대별/타입별로 차이가 있음 (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li> <li>·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 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 및 단열재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li> <li>· 고객 요청에 의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 위치의 변경이 불가함</li> <li>·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스마트홈 어플리케이션 제어 기능은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사용이 불가할 수 있음</li> <li>·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모델명은 추가 선택품목 계약 시 별도 안내 예정임</li> </ul>
빌트인 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빌트인 전기오븐 (전타입 적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가구로 마감됨</li> <li>· 제품 성능 개선과 관련 법규 개정 등으로 제품 사양 변경 시 모델명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제품 단종 시 동등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 시공됨</li> <li>· 제품 무상A/S 기간은 준공 후 3년이며, 소비자 과실로 인한 A/S는 유상처리됨</li> <li>· 해당 제품은 입주시점이 아닌 공사 일정에 맞춰 생산된 제품이 설치됨</li> </ul> </li> <li>- <b>3구 쿡탑[하이브리드] (전타입 적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옵션 미선택 시 4구 가스쿡탑이 설치됨.</li> <li>· 제품 성능 개선과 관련 법규 개정 등으로 제품 사양 변경 시 모델명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제품 단종 시 동등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 시공됨</li> <li>· 제품 무상A/S 기간은 준공 후 3년이며, 소비자 과실로 인한 A/S는 유상처리됨</li> <li>· 해당 제품은 입주시점이 아닌 공사 일정에 맞춰 생산된 제품이 설치됨</li> </ul> </li> <li>- <b>빌트인 김치냉장고 (59~132타입 적용/ *49타입 제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옵션은 발코니 확장 계약 시 선택 가능함</li> <li>· 옵션 선택 시 김치냉장고 전면 주방가구 도어 마감과 맞춤형 수납가구를 포함하여 제공됨</li> <li>· 김치냉장고는 빌트인 제품으로, 제품 바닥 및 후면에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li> <li>· 해당 옵션 미선택 시 일반 프리스탠딩 김치냉장고 배치가 가능한 공간이 제공되며, 후면 벽지, 바닥은 마루가 시공됨</li> <li>· 제품의 크기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설치 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람</li> <li>· 제품 성능 개선과 관련 법규 개정 등으로 제품 사양 변경 시 모델명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제품 단종 시 동등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 시공됨</li> <li>· 제품 무상A/S 기간은 준공 후 3년이며, 소비자 과실로 인한 A/S는 유상처리됨</li> <li>· 해당 제품은 입주시점이 아닌 공사 일정에 맞춰 생산된 제품이 설치됨</li> <li>· 옵션 선택 시 가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수납공간 구성이 변경될 수 있음</li> </ul> </li> <li>- <b>현관 공기청정 시스템 (전타입 적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옵션 선택시 가구 내부 구성이 변경되어 수납공간이 줄어들 수 있음</li> <li>· 제품 성능 개선과 관련 법규 개정 등으로 제품 사양 변경 시 모델명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제품 단종 시 동등 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 시공됨</li> <li>· 제품 무상A/S 기간은 준공 후 3년이며, 소비자 과실로 인한 A/S는 유상처리됨</li> <li>· 해당 제품은 입주시점이 아닌 공사 일정에 맞춰 생산된 제품이 설치됨</li> <li>· 해당 제품은 조명 일체형으로, 해당 옵션 선택 시 기존의 현관조명은 설치되지 않음</li> <li>· 컨트롤러 색상은 벽체 마감 색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ul> </li> </ul>

공간 /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현관 중문 (전타입 적용)</b></li> <li>· 해당 옵션 선택 시 신발장 길이와 구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디딤판 사이즈의 폭과 길이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평면 구조 및 현관 크기에 따라 중문 형태 및 크기가 상이할 수 있으니, 평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li> <li>· 해당 옵션 선택 시 세부 디테일 및 형상, 제조사 등은 변경될 수 있음</li> <li>· 3연동 슬라이딩 도어 특성상 개방 시 벽체에서 돌출되며, 돌출 사이즈는 타입별로 다를 수 있음</li> <li>· 현관 중문은 세대 내 공간 분리를 위한 문으로 단열, 차음, 기밀 등의 성능이 고려되지 않은 상품임</li> <li>- <b>침실 불박이장 (전타입 적용)</b></li> <li>· 침실 불박이장은 침실1(단 49타입은 침실, 72E타입 및 132타입은 침실2)에 설치되고, 고객 요청에 의한 설치위치 변경이 불가함</li> <li>· 해당 옵션 선택 시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li> <li>·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기본형 벽지 및 마루로 시공됨</li> <li>· 타입별로 크기와 위치가 상이하므로 도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li> <li>· 해당 옵션 선택 시 타입에 따라 공간 상의 이유로 배선기구, 스프링클러, 환기디퓨저의 배치 및 수량은 달라질 수 있음</li> <li>· 수납성 개선 및 시공상의 이유로 인해 가구의 크기 및 구성, 하드웨어사양, 마감재질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b>안방 슬라이딩장 (59~132타입 적용 / *49,115타입 제외)</b></li> <li>·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기본형 벽지 및 마루로 시공됨</li> <li>· 타입에 따라 가구의 길이와 내부 구성이 상이할 수 있음</li> <li>· 가구 수납 개선을 위해 내부 구성 및 사이즈 등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li> <li>·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소방감지기 및 배선기구 스프링클러, 환기디퓨저의 배치 및 수량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li> <li>· 72D, 72E, 84C, 84D, 132타입의 경우 해당옵션 선택 시 드레스룸이 삭제됨</li> <li>- <b>침실3 슬라이딩 도어 (97,115타입 적용)</b></li> <li>· 해당 옵션은 발코니 확장 계약 시 선택 가능함</li> <li>· 해당 옵션 선택 시 기존의 도배 벽체 및 목창호 부위가 3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되며, 주방 날개벽은 주방가구 fix 패널로 주방가구와 동일한 컬러로 시공됨</li> <li>· 해당 옵션 선택 시 스위치 및 온도조절기의 위치가 변경됨</li> <li>- <b>안방/서재 통합 (115타입 적용)</b></li> <li>· 옵션 선택 시 우물천장 및 간접조명이 추가됨</li> <li>· 옵션 선택 시 기존의 안방, 서재의 각각의 스위치 및 온도조절기는 하나로 통합, 간접조명 스위치는 별도로 설치되며 배선기구, 스프링클러, 환기디퓨저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옵션 선택 시 안방에어컨의 냉방용량은 상향되어 설치됨</li> <li>- <b>드레스룸 고급화 (115타입 적용)</b></li> <li>· 해당 옵션은 발코니 확장 계약 시 선택 가능함</li> <li>·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가구 도어 및 내부 시스템선반은 기본형으로 시공되며 중앙의 아일랜드 서랍장은 미설치됨</li> <li>· 해당 옵션 미선택 시 벽체는 기본형 벽지로 시공됨</li> <li>· 수납성 개선 및 시공상의 이유로 내부 구성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음</li> </ul>
마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대형타일 아트월 (전타입 적용)</b></li> <li>· 해당 옵션은 발코니 확장 계약 시 선택 가능함</li> <li>·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기본형으로 시공됨</li> <li>· 타입에 따라 시공 부위 및 면적이 상이하므로 견본주택 및 옵션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li> <li>· 설치 나누기 및 배치는 본 시공과 견본주택이 상이할 수 있음</li> <li>· 타일 자재 특성에 따라 실제 타일의 무늬는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li> <li>· 터닝도어 선택(기본 제공 옵션) 시 아트월 설치 면적이 줄어들며 이 비용은 별도로 공제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픽처레일은 49, 59A, 59B타입은 설치되지 않으며 115타입은 복도 2면에 설치됨</li> <li>- <b>주방가구 고급화 (전타입 적용)</b></li> <li>· 해당 옵션은 발코니 확장 계약 시 선택 가능함</li> <li>·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기본형로 시공되며 여닫이장 형태로 제공됨</li> <li>· 해당 옵션 선택 시 글라스 플랩잠, 여닫이장(마감, 색상 변경) + 미드웨이 선반이 설치되며 평면 컨디션에 따라 주방가구의 형태, 구성 및 액세서리 적용여부 등은 상이할 수 있음 (49타입의 경우 평면상의 이유로 미드웨이선반이 아닌 미드웨이장 형태로 제공됨)</li> <li>· 본 공사 시 수납성 및 품질개선 등의 사유로 하드웨어 사양, 마감재질, 내부구성 등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b>엔지니어드 스톤 주방벽체 (전타입 적용)</b></li> <li>· 해당 옵션 미선택 시 주방 주방벽체는 타일로 시공되며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설치되는 면적이 상이함</li> <li>· 해당 옵션 선택시 마감두께 변경에 따라 주방가구 사이스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엔지니어드스톤 나누기는 본 시공과 견본주택이 상이할 수 있음</li> <li>- <b>글라스 현관가구 (전타입 적용)</b></li> <li>·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기본형 PET시트 마감(도어1면 거울마감) 의 현관가구가 시공됨</li> <li>· 타입에 따라 가구의 길이와 내부 구성이 상이할 수 있음</li> <li>· 가구 수납 개선을 위해 내부 구성 및 사이즈 등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li> <li>· 브라운 컬러 선택 시 오픈장 상판이 그레이 컬러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변경됨</li> <li>- <b>원목마루 (전타입 적용)</b></li> <li>· 해당 옵션은 발코니 확장 계약 시 선택 가능함</li> <li>·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기본형 강마루로 시공됨</li> <li>· 해당 옵션 선택 시 마루가 설치되는 전체 공간에 단일품목으로 설치되며, 각 실별 부분 선택이 불가함</li> <li>· 강마루와 원목마루는 폭, 사이즈, 색상 및 질감의 차이가 있으며, 원목마루는 천연자재이므로 실시공 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li> <li>· 원목마루 자재특성 상 고유의 웅이 및 무늬, 워터라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을 따름</li> <li>· 마루의 설치 나누기 및 배치는 본 시공과 견본주택이 상이할 수 있음</li> <li>· 제품 단종 시 동등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 시공됨</li> </ul>
Io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LED 감성조명 (전타입 적용)</b></li> <li>· 해당 옵션은 발코니 확장 계약 시 선택 가능함</li> <li>·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기본 LED조명 및 기본형 음성인식 대기전력 차단 스위치가 설치됨</li> <li>· 해당 옵션 선택 시 패턴 연출이 가능한 감성조명용 음성인식 대기전력 차단 스위치가 적용됨</li> <li>· 115㎡타입 안방/서재 통합 옵션과 동시 선택 시 간접조명 스위치는 일반형 On/Off 스위치가 설치됨</li> <li>- <b>IoT 스마트화장대 (72~132타입 적용/ *49,59타입 제외)</b></li> <li>·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기본형 좌식 화장대와 수납형이 아닌 은경(거울)으로 시공됨</li> <li>· 해당 옵션 선택 시 이동식 화장대, 스마트 미러, 간접조명이 제공되며, 3면 벽체는 패널로 마감됨</li> <li>· 해당 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이동식 화장대는 후면 고정인 상태로 제공되며 이동은 가능하지만 뒷고정된 부분의 자국이 남을 수 있음</li> <li>· 평면 구조에 따라 화장대 길이와 구성, 상부 수납장의 구성이 일부 상이할 수 있음</li> <li>· 스마트미러가 설치되는 은경 수납장의 일부 공간은 수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음 (전원 및 콘텐츠 제공용 H/W 설치 공간)</li> <li>· 스마트미러 콘텐츠는 입주민 세대 무선 인터넷 사용 시 제공이 가능하며, 제조사 정책에 따라 제품 및 음성인식, 체중계 연계 콘텐츠는 일부 변동 또는 미적용 될 수 있음 (콘텐츠 : 음성인식, 체중계 연계, 시계, 날씨, 뉴스, 도착버스 정보 등)</li> <li>· 스마트미러의 제품 무상 A/S 기간은 준공 후 3년이며, 소비자 과실로 인한 A/S는 유상처리됨</li> </ul>

공통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공사 시작 이후 자재발주 및 시공상의 문제로 계약변경 및 해제가 불가하며, 해지 시 위약금과 원상회복비용(실손해액)을 부담해야 함</li> <li>·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위치는 카탈로그 기준(침실명은 확장형 평면 기준)으로 상세한 사항은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람. 설치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 할 수 없음</li> <li>· 추가 선택품목은 취득세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입주 시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li> <li>· 추가 선택품목은 본 공사 시 제조사의 사정으로 형태 및 컬러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추가 선택품목은 타입별로 형태 및 사이즈, 내부구성이 상이할 수 있음</li> <li>· 추가 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개로 판매·진행되며, 계약내용, 납부방법, 납부계좌, 계약주체 및 제품관련 사항 등은 추가 선택품목 계약자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임.(일부 마감자재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li> <li>· 추가 선택품목 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자에 입금 바라며, "시행자"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li> <li>· 향후 고지할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음</li> <li>·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li> </ul>
--------	--

■ 추가 선택품목 납부일정 및 계좌

구분	계약금	중도금(2022.06.15.)	잔금(입주지정일)
추가 선택품목(옵션) 납부일정	추가 선택품목(옵션) 금액의 10%	추가 선택품목(옵션) 금액의 10%	추가 선택품목(옵션) 금액의 80%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옵션) 납부계좌	납부계좌, 납부일정 등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세대별 추가 선택품목(옵션)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시 별도 생성되어 고지될 예정이니,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추가 선택품목(옵션) 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지정된 세대별 추가 선택품목(옵션) 가상계좌로 지정된 납부일자에 입금바라며, 납부일정에 대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계약금 미입금 시 추가 선택품목(옵션) 계약은 자동으로 취소 처리됨

※ 추가 선택품목(옵션) 계약서에 기재된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으며, 오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피해에 대하여 시행자 및 시공자는 책임을 지지 않음

□ 기본 선택품목

구분	공간/가구	마감재
	터닝 도어	강마루 색상 선택 [ ①강오크, ②강그레이, ③강브라운 중 택 1 ]
해당 주택형	49, 59C, 59D, 72A, 72B, 72C, 72D, 72E, 84A, 84B, 84C, 84D, 84E, 84F, 97, 115, 132 (59A, 59B타입 미 적용 / 발코니 확장 시에도 설치 불가함)	전 타입

■ 기본 선택품목 유의사항

구분	내용
마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마루</li> <li>·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기본형 강오크 색상으로 시공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루의 설치 나누기 및 배치는 본 시공과 견본주택이 상이할 수 있음</li> <li>• 제품 단종 시 동등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 시공됨</li> </ul>
공간 /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터닝도어</b></li> <li>• 해당옵션은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 가능하며 타입에 따라 터닝도어가 설치되는 부위가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타입별 옵션 안내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9A,59B타입 설치불가(발코니 확장 시에도 설치 불가함)</li> <li>* 49, 59C~97,132타입: 거실-안방 / 115타입: 거실-서재</li> </ul> </li> <li>• 해당 옵션 미선택 시 해당 부위 거실 벽체는 아트월(대형타일 아트월 선택한 경우 해당 타일로 시공)되며, 발코니 벽체는 도장 시공됨</li> <li>•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소방감지기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수량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li> <li>• 본 공사 시 도어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음</li> <li>• 제품 단종 시 동등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 시공됨</li> </ul>

## Ⅶ. 기타 계약자 안내

### ■ 입주 예정일 및 사전 점검 안내

- 입주예정일 : 2024 년 09 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일을 고려하여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 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1 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계약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 정책 또는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 사전점검 안내 :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주개시 전 약 45 일~75 일 전에 특정일자를 통보하여 입주자 사전점검 행사를 실시할 예정임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에치금을 부과함

### ■ 소비자 피해보상

- 공동주택(아파트) 하자보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 36, 37 조, 동법 시행령 제 36, 37, 38 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9 조, 동법시행령 제 5 조에 따라 적용됨

### ■ 부대복리시설

- 주차장(지하), 관리사무소, 경비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8 개소(배드민턴장 3 개소, 체력단련시설 5 개소), 주민공동시설[수영장(2 단지 1 개소),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사우나 등], 어린이집, 작은도서관/독서실, 경로당, 게스트하우스, 근린생활시설 등

###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구획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2.3m (일부 택배차량 통행 부위는 2.7m)	2.1m	2.3m (일부 택배차량 통행 부위는 2.7m)

■ 내진설계

• 건축법 제 48 조 제 3 항에 따른 내진성능을 확보하였으며, 건축법 제 48 조의 3 제 2 항에 따라 산정된 내진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VII 등급, 최대지반가속도 0.173g 임 (VII-0.173g)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	전기	소방/정보통신
회사명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태양기술단주식회사	(주)한국나이스기술단
감리금액	14,708,176,670원	1,548,418,720원	1,408,000,000원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를 포함)까지	1,044,716,400,000 원	제 01282021-101-0018300 호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
-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획(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획을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획을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획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오피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 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 추가 선택품목(옵션)은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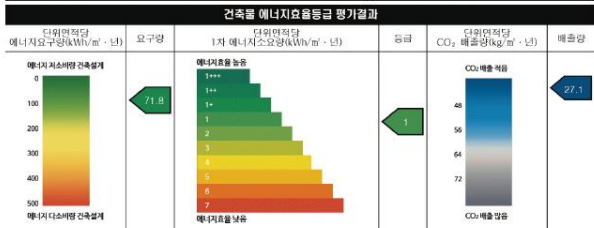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1단지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1. 28.>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건축물 개요		인증개요	
건축물명	문원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1단지)	인증번호	17-주-에-1-0142
준공연도	2021년 12월 31일	평가자	김중희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문원동 100-13번지 일원	인증기관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층 수	지하6층 / 지상35층	운영기관	한국에너지공단
면적	219598.5134(㎡)	유효기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설계자	영남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인증등급	
		인증등급 : 1등급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25.9	51.3	40.6	10.8
급탕	30.7	35.4	26.3	7.2
조명	15.2	15.2	41.9	7.1
환기		4.2	11.6	2.0
합계	71.8	106.1	120.4	27.1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분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sub>2</sub> 배출량 에너지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 ) [설치된] / [설치되지 않은] 건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모칭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장 2017년 09월 28일

2단지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1. 28.>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건축물 개요		인증개요	
건축물명	문원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2단지)	인증번호	17-주-에-1-0141
준공연도	2021년 12월 31일	평가자	김중희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문원동 100-13번지 일원	인증기관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층 수	지하6층 / 지상35층	운영기관	한국에너지공단
면적	246449.6264(㎡)	유효기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설계자	영남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인증등급	
		인증등급 : 1등급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26.8	53.3	42.2	11.2
급탕	30.7	35.4	26.3	7.2
조명	15.3	15.3	42.0	7.2
환기		4.3	11.8	2.0
합계	72.8	108.3	122.3	27.6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분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sub>2</sub> 배출량 에너지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 ) [설치된] / [설치되지 않은] 건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모칭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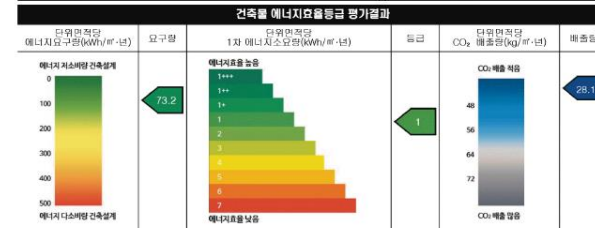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장 2017년 09월 28일

3단지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1. 28.>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건축물 개요		인증개요	
건축물명	문원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3단지)	인증번호	17-주-에-1-0143
준공연도	2021년 12월 31일	평가자	김중희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문원동 100-13번지 일원	인증기관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층 수	지하6층 / 지상35층	운영기관	한국에너지공단
면적	203933.8268(㎡)	유효기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설계자	영남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인증등급	
		인증등급 : 1등급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26.7	54.6	43.3	11.5
급탕	30.7	35.4	26.3	7.2
조명	15.8	15.8	43.5	7.4
환기		4.2	11.6	2.0
합계	73.2	110.0	124.7	28.1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분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sub>2</sub> 배출량 에너지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 ) [설치된] / [설치되지 않은] 건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모칭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장 2017년 09월 28일

※ 본 공고문에 포함된 인증서는 예비 인증서로, 최종 인증서 등급이 달라지거나, 각 항목별 점수가 달라질 수 있음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1단지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은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1단지) 건축주: 은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준공(예정)일: 2021.12.31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00-13번지 일원 층수: 지하6층, 지상35층 면적: 219,598.5134㎡ 건축물의주된용도: 공동주택 설계자: 영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인증번호: 2018-004 인증기관: 한국감정원 유효기간: 2018.01.04~사용검사일  인증등급 인증등급: 우수(그린2등급)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05호, 환경부고시 제2014-213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 우수(그린2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18년 01월 04일

한국감정원장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하며, 실제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단지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은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2단지) 건축주: 은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준공(예정)일: 2021.12.31.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00-13번지 일원 층수: 지하6층, 지상35층 면적: 264,449.6264㎡ 건축물의주된용도: 공동주택 설계자: 영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인증번호: 2018-005 인증기관: 한국감정원 유효기간: 2018.01.04.~사용검사일  인증등급 인증등급: 우수(그린2등급)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05호, 환경부고시 제2014-213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그린2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18년 01월 04일

한국감정원장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하며, 실제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단지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은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3단지) 건축주: 은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준공(예정)일: 2021.12.31.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00-13번지 일원 층수: 지하6층, 지상35층 면적: 203,933.8268㎡ 건축물의주된용도: 공동주택 설계자: 영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인증번호: 2018-006 인증기관: 한국감정원 유효기간: 2018.01.04.~사용검사일  인증등급 인증등급: 우수(그린2등급)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05호, 환경부고시 제2014-213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그린2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18년 01월 04일

한국감정원장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하며, 실제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포함된 인증서는 예비 인증서로, 최종 인증시 등급이 달라지거나, 각 항목별 점수가 달라질 수 있음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서

1단지

신청접수번호 : m-RAPA-2107-4514 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서

아래 공사 시행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습니다.

1. 공사내용	
공사명	온천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2단차
공사 장소(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300-13
공사의 종류	공용주택 (V) 건축물( ) 도시계획도( )
2.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옥외안테나 설치 위치	1. 옥상층 104층, 107층, 109층
중계장치 설치 위치	1. 옥상층 104층, 107층, 109층 2. 지하시층 110층 PTC, 112층 PTT
입지단체 위치	이동통신용계장치의 최근접
전원단체 위치와 용량	이동통신용계장치의 최근접(총용량44W 이상, 교류 220V, 단차 3개 이상)
3. 공동주택500세대 이상에 대한 사업주체의 협의결과 게시 방법	
중계장치의 설치 위치 공개방법	입주자 모집공고문 또는 커미션드루의 전문 파일
협의사항 접수 예정일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제2항)에 의거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주체는 해당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협의 결과에 따른 중계장치의 설치 위치를 공개해야 함	
4. 공사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	① 입지단체 및 사업계획(건축공사서)서 시공 1층 계획 ② 옥상층에 시설 할 계획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 (이동통신구내설비 및 중계설비) ③ 건축물의 옥상(공동주택 및 구내용 이동통신 용계설비)의 설치 용량사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협의사항	'상세 협의 결과' 참조

※ 건축물 준공 이전에 이동통신 안테나, 중계장치 등 중계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참보] 구내용 이동통신 중계장치 및 옥외안테나 설계도면 1부.  
상기 협의내용 이외의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할 것을 상호 합의하였음.

2021년 08월 05일

구분	법인(단체)명(상호)	대표자(성명)
건축주	온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신귀철
대리인	(주)영원종합건축사사무소	이보희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  
RAPA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  
안 권 각 비 권 영

2단지

신청접수번호 : m-RAPA-2107-4515 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서

아래 공사 시행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습니다.

1. 공사내용	
공사명	온천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2단차
공사 장소(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300-13
공사의 종류	공용주택 (V) 건축물( ) 도시계획도( )
2.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옥외안테나 설치 위치	1. 옥상층 201층, 205층, 207층, 209층
중계장치 설치 위치	1. 옥상층 201층, 205층, 207층, 209층 2. 지하시층 210층 PTC, 212층 PTT
입지단체 위치	이동통신용계장치의 최근접
전원단체 위치와 용량	이동통신용계장치의 최근접(총용량44W 이상, 교류 220V, 단차 3개 이상)
3. 공동주택500세대 이상에 대한 사업주체의 협의결과 게시 방법	
중계장치의 설치 위치 공개방법	입주자 모집공고문 또는 커미션드루의 전문 파일
협의사항 접수 예정일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제2항)에 의거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주체는 해당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협의 결과에 따른 중계장치의 설치 위치를 공개해야 함	
4. 공사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	① 입지단체 및 사업계획(건축공사서)서 시공 1층 계획 ② 옥상층에 시설 할 계획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 (이동통신구내설비 및 중계설비) ③ 건축물의 옥상(공동주택 및 구내용 이동통신 용계설비)의 설치 용량사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협의사항	'상세 협의 결과' 참조

※ 건축물 준공 이전에 이동통신 안테나, 중계장치 등 중계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참보] 구내용 이동통신 중계장치 및 옥외안테나 설계도면 1부.  
상기 협의내용 이외의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할 것을 상호 합의하였음.

2021년 08월 05일

구분	법인(단체)명(상호)	대표자(성명)
건축주	온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신귀철
대리인	(주)영원종합건축사사무소	이보희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  
RAPA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  
안 권 각 비 권 영

3단지

신청접수번호 : m-RAPA-2107-4516 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서

아래 공사 시행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습니다.

1. 공사내용	
공사명	온천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2단차
공사 장소(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300-13
공사의 종류	공용주택 (V) 건축물( ) 도시계획도( )
2.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옥외안테나 설치 위치	1. 옥상층 305층, 307층
중계장치 설치 위치	1. 옥상층 305층, 307층, 309층 2. 지하시층 306층 PTC, 310층 PTT
입지단체 위치	이동통신용계장치의 최근접
전원단체 위치와 용량	이동통신용계장치의 최근접(총용량44W 이상, 교류 220V, 단차 3개 이상)
3. 공동주택500세대 이상에 대한 사업주체의 협의결과 게시 방법	
중계장치의 설치 위치 공개방법	입주자 모집공고문 또는 커미션드루의 전문 파일
협의사항 접수 예정일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제2항)에 의거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주체는 해당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협의 결과에 따른 중계장치의 설치 위치를 공개해야 함	
4. 공사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	① 입지단체 및 사업계획(건축공사서)서 시공 1층 계획 ② 옥상층에 시설 할 계획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 (이동통신구내설비 및 중계설비) ③ 건축물의 옥상(공동주택 및 구내용 이동통신 용계설비)의 설치 용량사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협의사항	'상세 협의 결과' 참조

※ 건축물 준공 이전에 이동통신 안테나, 중계장치 등 중계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참보] 구내용 이동통신 중계장치 및 옥외안테나 설계도면 1부.  
상기 협의내용 이외의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할 것을 상호 합의하였음.

2021년 08월 05일

구분	법인(단체)명(상호)	대표자(성명)
건축주	온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신귀철
대리인	(주)영원종합건축사사무소	이보희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  
RAPA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  
안 권 각 비 권 영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사업주체(시행사)	시공회사(시공사)
온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법인등록번호 : 180171-0009731)	삼성물산(주) (법인등록번호: 110111-0015762)

## Ⅷ. 유의 사항

### ■ 일반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1.12.13 일 사업시행변경인가서를 기준으로 하되, 그 외에 "시행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진행할 수 있음 계약 체결 전 최종 사업시행인가 설계도서의 평면도, 배치도 및 사업지 주변현황 등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시공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li> <li>• 계약 이후 관련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 발생 시 "시행자"의 결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행자" 또는 "감리자"의 요청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시행자"의 인·허가 결과에 따름</li> <li>• 세대별 대지지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 63 조 제 1 항 제 6 호에 의거 건축시설의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그 대지소유권이 주어지되, 추후 확정측량에 의거 대지면적 변경 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li> <li>• 입주자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관리비는 단지별로 각각 또는 통합 산정될 수 있으며, 실입주 후 또는 입주하지 않고 입주지정기간이 지난 후 발생하는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함</li> <li>•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복도 등)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li> <li>•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 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단, 입주 후 입주관리를 위한 하자관리 사무실은 조합의 승인 후 설치할 수 있음)</li> <li>•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개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하자발생시 기존 설치 마감재에 대하여 일부 하자보수가 제외될 수 있음</li> <li>•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구조변경으로 인한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가 제외될 수 있음</li> <li>• 계약자('입주자')가 본 계약 외 발코니 확장부위 등에 개인적으로 시공·설치한 바닥단열 및 마감재, 창호, 실외기실 루버 등의 제반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와 무관함</li> <li>•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은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을 기준으로 하고, 준공도서에서 제외된 "시행자" 발주의 별도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시행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시공자"와 무관함</li> <li>• 공사 중 천재지변, 전염병 대유행,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폭동 및 파업, 기반시설공사 지연, 건설업 전반의 급격한 시황변동(원자재 가격 폭등, 자재공급 중단 등), 추가공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님. 입주 지연 시에는 "시행자" 또는 "시공자"가 입주 전 별도 안내 예정임</li> <li>•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센터, 경로당, 어린이집, 게스트하우스, 옥상조경 등)의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함. 단,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으나 입주지정기간 경과 후 발생하는 관리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함</li> <li>• 단지 내 (공용)보차도는 준공 이후 입주민이 관리하여야 함</li> <li>•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 일반조항에 의거 해약 조치됨</li> <li>• 본 공고문에 포함된 인증서는 예비 인증서로, 최종 인증시 등급이 달라지거나, 각 항목별 점수가 달라질 수 있음</li> <li>• 본 단지의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는 택지 구분없이 계획되었으며 단지 내 모든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지하주차장 등)은 (임대)아파트 입주민과 공동 사용함</li> <li>• 2 단지에 설치되는 수영장은 전체단지(1 단지, 2 단지, 3 단지)가 공동으로 사용함</li> <li>•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시행자"의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li> <li>• 영유아 보육법 개정('18.12.24 개정)에 따라 신규 500 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와 관련하여, "시행자"가 "조합원" 및 '입주자대표회의(가칭)'와 협의하여 결정 예정임</li> <li>•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 9 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 일전부터 60 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li> <li>•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샘플하우스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 하기로 함</li> <li>•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시행자" 및 "시공자"와 무관한 사항임</li> <li>• 학교 배정 등 교육정책은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르며, 해당 주택개발지역은 금정초등학교 및 온천초등학교로 배정됨</li> <li>• 1 단지가 둘의 행정구역(동래구 및 금정구)에 걸쳐 있어 이전고시 시점에서 1 단지 택지에 대한 신규지번 부여시 행정구역이 조정될 수 있음</li> <li>• 당해 사업에 사용된 "시공자"의 브랜드(단지명 포함)와 동명칭(동수)은 향후 "시행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 "시행자"의 결정에 따라 단지 내 조경, 주동, 부대시설, 커뮤니티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보행로 등은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해 레이아웃,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등의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 전 분양계약서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 후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li> </ul>
마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양광에 오래 노출되는 모든 마감재 및 가구표면재 등은 시간 경과 시 표면의 일부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li> <li>· 모든 공장생산 자재의 경우 공장제작 제품 특성상 동일 회차 생산품이 아닌 경우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생산이 어려워 미세한 이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니며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 및 시방서에 의해 결정됨</li> <li>· “시행자”와 “시공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자재의 독점, 단종, 품질, 품귀, 해당 제조업체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되거나 비치된 각종 제품 및 자재의 경우 단종, 제품품질, 생산중단, 제조사의 도산 및 공급거절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행자”의 결정에 따름</li> <li>·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신발장, 붙박이장, 화장대 등)의 도장 및 시트 제품은 설치 후 시간경과 시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고,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 대비 도막 및 시트 두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제조사 및 색상은 본공사 시 동등수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li> <li>· 모든 천연자재의 경우 천연자재 특성상 표면무늬가 일정하지 않음. 원목마루 등은 동일 수종이라 하여도 천연자재의 특성상 무늬와 색상이 일정하지 않고 웅이와 워터마크 등이 있는 부분이 사용될 수 있음. 커뮤니티센터 및 외부시설물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천연석의 경우 패턴과 색상 등이 다를 수 있으며 석재별로 균열의 흔적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님</li> <li>·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과 설명을 참고 바람 (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li> <li>· 아트월 및 벽체에 부착된 타일 및 석재는 시공법에 따라 벽체와 떠있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어 TV 설치 등 입주자 필요에 의한 임의타공 시 파손될 수 있으므로 생활지원센터에 주의사항을 확인 바람</li> </ul>
견본주택/ 홍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모델하우스,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li> <li>·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와 모형 및 카탈로그에 표현된 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의 전시품 등은 지급되지 않으며, 건립세대 내에는 분양가 포함품목과 전시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며,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무상으로 추가 선택 시에만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li> <li>· 견본주택에 들어가는 전시품에는 가구 및 조명과 함께 전시조명에 들어가는 전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전원은 본 공사 시 제공되지 않음</li> <li>·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시설물(공용계단, 공용로비,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최종 사업시행인가도서(설계변경도서 포함)에 준함</li> <li>·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카탈로그 등에 표현된 공동주택은 확장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창호의 열리는 방향, 난간의 위치는 견본주택 및 단위세대 평면도를 우선함</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홈 네트워크 기기류, 온도조절기, 환기컨트롤러 등의 제품 사양, 위치, 개수는 변경될 수 있음</li> <li>· 견본주택 단위세대에 설치된 소방 감지기, 유도등, 비상방송용 스피커 및 스프링클러 헤드는 견본주택을 위한 소방설비로 실제 시공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주택형을 제외한 그 밖의 주택형 및 타입은 모형과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람,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마감재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하시기 바람</li> <li>·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므로 기본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고 가구배치 및 지급여부가 다르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및 계약조건을 확인후에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li> <li>·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사업 규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사이버 모델하우스에서 확인 가능함</li> <li>·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됨</li> <li>· 견본주택에서 제공하는 카탈로그,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조감도 및 전시 조형물 등에 표현된 이미지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li> <li>· 모형, CG 와 견본주택 시공 내용이 상이한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함</li> <li>· 사이버 모델하우스의 VR 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 유·무상옵션상품이 포함된 VR 동영상이므로 사이버 모델하우스 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li> <li>· 입주자모집공고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시 해당제품의 포함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li> </ul>

■ 설계관련 주요 고지 사항

구 분	내 용
일반사항	· ‘계약자’는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주변현황 포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분양 후 단지 주변의 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인해 주변시설(도시계획 시설 포함)의 변경이 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은 전 단지 평형타입별 면적을 합산 후 주거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였음 (주거공용면적 중 벽체공용면적은 평형 타입별 벽체공용면적을 반영함)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 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지경계 및 면적은 정비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른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 본 공동주택은 도시계획 도로로 3개의 단지로 나누어져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7호(주택단지)의 다목에 따라 하나의 “시행자”로 분양되고 공동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어 하나의 단지로 관리되어야 하며, 부대복리시설 등도 하나의 단지로 관리 및 운영되어야 함 [각 단지별로 배치되어 있는 커뮤니티 등 부대복리시설(특히, 2단지 수영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함을 의미하며, 세부적인 관리 방안은 입주자 협의체에서 결정할 사항임]</li> <li>•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단지 내외부 도로(차도 및 보도)의 폭과 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 관련 수목 및 시설물,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조경석 쌓기 포함)의 형태, 공법,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동간거리를 확보했으나, 각 세대별 현황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특정 세대에 테라스 또는 구조물의 지붕공간이 제공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세대의 사용권을 인정하여야 하며, 테라스가 제공되는 세대들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용설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진입이 필요할 경우 개방하여야 함</li> <li>•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시행자”가 주관하되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가칭)’가 구성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임대 세대도 공동으로 사용함)</li> <li>• 단지 내 상가는 대지가 별도로 구획되지 않고 공동주택과 대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며, 상가 주차장은 각 상가의 전면에 위치한 도로에서 별도로 진·출입하도록 계획됨 (3단지 상가 2개동은 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함) - 1단지 : 식물원로 75번길 - 1-2단지간 15m도로, 2-3단지간 18m도로 - 3단지 : 금강공원로</li> <li>•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별 주차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으나, 현장여건상 동 및 코아별로 편차가 있을 수 있으며, 입주후 ‘입주자대표회의(가칭)’에서 운영방식을 결정함</li> <li>• 실외 텃밭이 설치될 경우, 조성되는 면적과 수량이 한정되어 “시행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칭)’ 주관으로 배분 및 운영할 수 있음</li> <li>• 일부 발코니는 관계법령에 따라 발코니 일부가 전용면적에 포함됨</li> <li>• 각종 인증(주택성능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등) 및 건강친화형주택설계기준, 결로방지 설계기준 등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이며, 실 적용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나 기술로 변경(설계변경 포함)될 수 있고, 적용 부위 및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li> </ul>				
<p>단지</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280 850 414 1117"> <p>일반사항</p> </td> <td data-bbox="414 850 2150 1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크상부, 건물 옥상 등 단지내 공용공간은 개인적으로 전유될 수 없으며, 관리자가 유지보수를 위해 세대 및 커뮤니티 시설을 통해 접근해야 할 경우 협조하여야 함</li> <li>• 단지 주변에는 각종 시설(공원, 근생, 종교시설, 어린이집, 노유자시설, 공공청사, 도로, 주거시설, 업무시설, 공영주차장, 육교 등)이 설치 되었거나, 추후 개발 계획에 따라 설치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각 세대에 직·간접적인 피해(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 진동, 냄새, 차량전동, 사생활침해 등)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단지 주변의 개발계획은 변동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 바람</li> <li>• “시행자”의 설계 변경 등에 따라 일부 공동주택 옥상에 경관조명 위치, 개소,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조명 점등 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단위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조경공간 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과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타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모형과 CG 및 배치도 등에 표현된 2단지 서측 금강공원 주차장과 인근의 육교시설은 현황을 반영한 것으로, 존치여부, 규모 및 위치 등은 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 입주 후 원활하고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해 AS 운영실(헤스티아라운지 등)을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 일부 등 공용부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li> <li>•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라 발생하는 관리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li> </ul> </td> </tr> <tr> <td data-bbox="280 1117 414 1355"> <p>배치</p> </td> <td data-bbox="414 1117 2150 13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내 조경 공간에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공간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주변 동은 소음, 진동,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다음 동 주변에는 드롭존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104동, 106동, 205동, 206동, 302동, 303동(인근동 포함)] (별도의 맘스테이션은 계획되어 있지 않음)</li> <li>• 다음 동 주변에는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상가, 문주, 승강기실, 계단실, 옹벽 등)이 설치되어, 인접한 주동은 소음, 진동 등에 의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 108동, 109동, 208동, 209동, 305동, 306동, 307동 (인근동 포함) - [상가] : 105동, 106동, 201동, 202동, 204동, 301동, 307동 (인근동 포함) - [문주] : 107동, 201동, 207동, 210동, 304동, 305동, 307동 (인근동 포함, 시행자의 설계변경에 따라 문주 위치, 개소,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승강기실/계단실] : 108동, 111동, 207동, 208동, 210동, 212동, 213동, 306동, 307동, 309동, 310동 (인근동 포함)</li> </ul> </td> </tr> </table>	<p>일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크상부, 건물 옥상 등 단지내 공용공간은 개인적으로 전유될 수 없으며, 관리자가 유지보수를 위해 세대 및 커뮤니티 시설을 통해 접근해야 할 경우 협조하여야 함</li> <li>• 단지 주변에는 각종 시설(공원, 근생, 종교시설, 어린이집, 노유자시설, 공공청사, 도로, 주거시설, 업무시설, 공영주차장, 육교 등)이 설치 되었거나, 추후 개발 계획에 따라 설치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각 세대에 직·간접적인 피해(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 진동, 냄새, 차량전동, 사생활침해 등)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단지 주변의 개발계획은 변동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 바람</li> <li>• “시행자”의 설계 변경 등에 따라 일부 공동주택 옥상에 경관조명 위치, 개소,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조명 점등 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단위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조경공간 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과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타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모형과 CG 및 배치도 등에 표현된 2단지 서측 금강공원 주차장과 인근의 육교시설은 현황을 반영한 것으로, 존치여부, 규모 및 위치 등은 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 입주 후 원활하고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해 AS 운영실(헤스티아라운지 등)을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 일부 등 공용부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li> <li>•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라 발생하는 관리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li> </ul>	<p>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내 조경 공간에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공간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주변 동은 소음, 진동,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다음 동 주변에는 드롭존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104동, 106동, 205동, 206동, 302동, 303동(인근동 포함)] (별도의 맘스테이션은 계획되어 있지 않음)</li> <li>• 다음 동 주변에는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상가, 문주, 승강기실, 계단실, 옹벽 등)이 설치되어, 인접한 주동은 소음, 진동 등에 의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 108동, 109동, 208동, 209동, 305동, 306동, 307동 (인근동 포함) - [상가] : 105동, 106동, 201동, 202동, 204동, 301동, 307동 (인근동 포함) - [문주] : 107동, 201동, 207동, 210동, 304동, 305동, 307동 (인근동 포함, 시행자의 설계변경에 따라 문주 위치, 개소,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승강기실/계단실] : 108동, 111동, 207동, 208동, 210동, 212동, 213동, 306동, 307동, 309동, 310동 (인근동 포함)</li> </ul>
<p>일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크상부, 건물 옥상 등 단지내 공용공간은 개인적으로 전유될 수 없으며, 관리자가 유지보수를 위해 세대 및 커뮤니티 시설을 통해 접근해야 할 경우 협조하여야 함</li> <li>• 단지 주변에는 각종 시설(공원, 근생, 종교시설, 어린이집, 노유자시설, 공공청사, 도로, 주거시설, 업무시설, 공영주차장, 육교 등)이 설치 되었거나, 추후 개발 계획에 따라 설치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각 세대에 직·간접적인 피해(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 진동, 냄새, 차량전동, 사생활침해 등)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단지 주변의 개발계획은 변동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 바람</li> <li>• “시행자”의 설계 변경 등에 따라 일부 공동주택 옥상에 경관조명 위치, 개소,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조명 점등 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단위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조경공간 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과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타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모형과 CG 및 배치도 등에 표현된 2단지 서측 금강공원 주차장과 인근의 육교시설은 현황을 반영한 것으로, 존치여부, 규모 및 위치 등은 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 입주 후 원활하고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해 AS 운영실(헤스티아라운지 등)을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 일부 등 공용부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li> <li>•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라 발생하는 관리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li> </ul>				
<p>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내 조경 공간에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공간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주변 동은 소음, 진동,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다음 동 주변에는 드롭존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104동, 106동, 205동, 206동, 302동, 303동(인근동 포함)] (별도의 맘스테이션은 계획되어 있지 않음)</li> <li>• 다음 동 주변에는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상가, 문주, 승강기실, 계단실, 옹벽 등)이 설치되어, 인접한 주동은 소음, 진동 등에 의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 108동, 109동, 208동, 209동, 305동, 306동, 307동 (인근동 포함) - [상가] : 105동, 106동, 201동, 202동, 204동, 301동, 307동 (인근동 포함) - [문주] : 107동, 201동, 207동, 210동, 304동, 305동, 307동 (인근동 포함, 시행자의 설계변경에 따라 문주 위치, 개소,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승강기실/계단실] : 108동, 111동, 207동, 208동, 210동, 212동, 213동, 306동, 307동, 309동, 310동 (인근동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옹벽] : 110동, 111동, 112동, 211동, 212동, 213동, 214동, 308동, 309동, 310동 (인근동 포함)</li> <li>• 다음 동 주변에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상가, 정화조, 사우나, 주민공동시설 등)의 배기구, 환기구 및 보일러 배기연도 등이 설치되어, 수증기 및 소음,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 [ 105동, 106동, 107동, 111동, 201동, 202동, 204동, 207동, 213동, 301동, 306동, 307동, 309동 (인근동 포함) ]</li> <li>• 동 주변에는 지하시설의 급배기구,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이 계획되어 소음, 진동, 냄새에 따른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 개소, 형태 등은 변경될 수 있음</li> <li>• 다음 동은 분리수거장이 상대적으로 가까이 위치해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위치를 확인 바람 [104동, 105동, 112동, 208동, 210동, 214동, 304동, 305동 308동 등]</li> <li>• 다음 동 주변에는 부대복리시설 (재활용품기물보관소,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정화조, 열교환실, 실외기실, 주민공동시설 및 상가 등)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냄새,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102동, 105동~112동, 201동~213동, 301동, 303동~309동(인근동 포함)]</li> <li>특히 다음 동 주변은 발전기 가동 시 소음, 진동, 매연등의 영향이 발생 할 수 있음 [106동, 205동, 301동 (인근동 포함)]</li> <li>• 단지 내외 도로(주차장 진출입 램프, 비상차로 포함)와 산책로 등에 인접한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 가로등, 야간 조명에 의해 환경권과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li> <li>• 차량출입구 및 보행자 출입구의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음</li> <li>• 단지 서측 우장춘로 및 단지주변 도로에 GL+4m~15m의 옹벽 및 방음벽이 계획되어 있어 이로인해 저층부 일부세대의 조망, 환기 및 채광이 제한될 수 있으며, 방음벽의 설치여부 및 범위, 형태, 재질, 높이 등은 본 시공시 소음측정 및 인허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 1단지 : EL+39.9m 기준 8~13m(옹벽 포함 방음벽 상단)</li> <li>- 2단지 : EL+39.9m 기준 7~14m(옹벽 포함 방음벽 상단)</li> <li>- 3단지 : EL+36.7m 기준 4~15m(옹벽 포함 방음벽 상단)</li> <li>• 부대복리시설과 구조물이 일체화 되어 있는 동은 설비 공간의 일부가 공동으로 사용될 수 있고, 부대복리시설(상가포함)의 실외기가 동 인근(조경공간 또는 부대시설 상부 등)에 설치되어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101동, 105동, 106동, 107동, 108동, 109동, 111동, 112동, 201동, 202동, 204동, 206동, 207동, 208동, 209동, 211동, 301동, 303동, 304동, 305동, 306동, 307동, 308동, 309동 (인근 동 포함)]</li> <li>• 일부 부대복리시설(상가포함) 지붕에는 옥상조경이 계획되어 있어 주변 등에 조망권, 소음, 사생활 침해 및 보안상의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단지내 난간턱 높이, 난간 형태 및 재질 등은 변경될 수 있음</li> <li>• 단지 내·외부 지반 레벨차에 의하여 일부 세대의 전/후/측면에 옹벽, 석축, 자연경사면 등이 설치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li> <li>• 지상의 모든 급배기구(주차장 환기용, 지하 부대복리시설용, 제연용)의 위치 및 형태는 공사 진행 시 변경될 수 있음</li> <li>• 승강기 대수 및 인승, 속도는 동일세대 타입이라도 주동평면의 세대조합, 층수 등에 따라 다르게 설치됨</li> <li>• 단지 주변도로와 단지내 레벨차이로 인해 단지 및 주동으로 진입하는 보행로에 단차(계단) 또는 경사로가 형성될 수 있으며,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li> </ul>
주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동별 승강기는 다음과 같이 설치됨(21년 12월 사업시행변경인가 도서 기준)</li> <li>- 101동 17인승 1대, 102동 1-2호세대 17인승 1대, 3-4호세대 15인승 1대, 103동 1-3호세대 15인승 2대, 4-5호세대 17인승 1대, 104동 1-2호세대 15인승 2대, 3-4호세대 15인승 2대, 105동 1-3호세대 15인승 1대+17인승 1대, 4-5호세대 17인승 1대, 106동 1-2호세대 17인승 1대, 3-4호세대 15인승 2대, 107동 1-2호세대 15인승 1대, 3-4호세대 15인승 1대, 108동 1-3호세대 15인승 2대, 4-5호세대 17인승 1대, 109동 1-2호세대 15인승 2대, 3-4호세대 17인승 1대, 110동 1-2호세대 15인승 2대, 3-4호세대 17인승 1대, 111동 1-2호세대 15인승 2대, 3-4호세대 17인승 1대, 112동 1-2호세대 15인승 2대, 3-4호세대 17인승 1대,</li> <li>- 201동 1-3호세대 15인승 2대, 4-5호세대 17인승 1대, 202동 17인승 1대, 203동 1-2호세대 15인승 1대, 3-4호세대 17인승 1대, 5-6호세대 17인승 1대, 204동 1-2호세대 15인승 1대, 3-4호세대 15인승 1대, 5-6호세대 15인승 1대, 205동 1-2호세대 15인승 2대, 3-4호세대 17인승 1대, 206동 1-3호세대 15인승 2대, 4-5호세대 15인승 1대, 207동 15인승 2대, 208동 1-3호세대 15인승 1대+17인승 1대, 4-5호세대 15인승 2대, 209동 1-2호세대 15인승 2대, 3-4호세대 15인승 2대, 210동 1-2호세대 17인승 1대, 3-4호세대 17인승 1대, 211동 1-2호세대 17인승 1대, 3-4호세대 17인승 1대, 212동 1-2호세대 15인승 2대, 3-4호세대 15인승 2대, 213동 15인승 1대+17인승 1대, 214동 1-2호세대 15인승 2대, 3-4호세대 15인승 2대</li> <li>- 301동 24인승 2대, 302동 17인승 1대, 303동 15인승 1대+17인승 1대, 304동 1-2호세대 17인승 1대, 3-5호세대 15인승 2대, 305동 1-3호세대 15인승 1대+17인승 1대, 4-5호세대 17인승 1대, 306동 1-2호세대 15인승 2대, 3-4호세대 15인승 2대, 307동 1-3호세대 15인승 1대+17인승 1대, 4-5호세대 15인승 2대, 308동 1-2호세대 17인승 1대, 3-4호세대 15인승 2대, 309동 1-2호세대 15인승 2대, 3-4호세대 15인승 2대, 310동 1-2호세대 15인승 2대, 3-4호세대 17인승 1대</li> <li>• 발코니 확장 선택시 제공되는 창호가 일면분할창으로 계획되어 있어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하므로 입주 및 이사 시 승강기를 활용하여야 함.</li> <li>• 레벨차이로 인해 주동지하층이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 저층부 석재마감과 다른 마감이 적용될 수 있음</li> <li>• 주동 저층부는 외부마감에 따라 창호 크기가 기준층 대비 축소될 수 있음</li> <li>• 공동주택 공용부, 필로티 등의 계획은 현장시공중 상품개선을 위해 변경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동 출입동선 및 기타 보행자 안전에 필요한 부위에는 캐노피가 설치될 수 있으며, 캐노피 주변 세대에는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지붕구조물은 형태, 색채,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일부 공동주택 지붕에는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되며(상세계획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태양광 집광판의 설치위치에 따라 옥상에 설치되는 시설물(옥상장식물, 옥상조경 등)의 위치, 형태, 설치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고, 태양광 모듈 설치에 따라 세대 내 빛 반사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일부 공동주택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방송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이동통신중계장치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고, 시설물 중 방송안테나와 태양광 집광판 설치위치는 아래와 같음 (단, 옥탑 및 지붕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종류, 위치, 수량 등은 인허가 과정 및 현장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li> </ul> <p>- 방송안테나 설치위치 : 110동, 214동, 309동</p> <p>- 태양광 집광판 설치위치 : 101동, 102동, 103동, 105동, 106동, 107동, 110동, 111동, 112동, 201동, 202동, 203동, 204동, 206동, 207동, 210동, 211동, 301동, 302동, 304동, 305동, 308동, 309동, 310동</p> <p>- 이동통신 안테나 및 중계장치 설치위치 : 104동, 107동, 109동, 201동, 205동, 207동, 208동, 305동, 306동, 307동, 지하3층: 110동 PIT, 112동 PIT, 212동 PIT, 213동 PIT, 308동 PIT, 310동 PI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동 옥상층에 지하층(지하주차장) 이동통신 및 커뮤니티 시설 공동 이용을 위한 인프라(안테나)가 설치될 수 있음</li> <li>· 주동 우편함 위치, 디자인,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li> <li>· 옥상조경, 벽면녹화 계획(설치유무, 설치부위, 마감재질 등)은 변경될 수 있음</li> <li>· 건물외벽 사인물 설치의 실 시공 시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됨</li> <li>· 공동주택 공용공간의 디자인, 마감 계획(마감재, 색상), 천장고 등은 "시행자"의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li> <li>· 공동주택 로비는 퓨어게이트(각동 1층 출입구) 등 시설물 적용에 따라 평면 형태, 우편함 위치, 마감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공동주택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찰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li> <li>· 주동 옥상구조물 측면에는 줄눈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li> <li>· 다음 동 저층 세대는 필로티 하부 차량통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112동, 211동, 214동, 310동)</li> <li>· 지하층 내 PIT 내부 일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 시공됨</li> <li>·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및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li> <li>· 입면 및 동출입구 등 주동 외관의 차별화 디자인(형태, 색채, 줄눈, 마감재, 조명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자"의 설계변경에 따라 커튼월록, 스트라다(일부 부대시설 및 데크 입면), 문주특화 디자인, 아트파사드[일부 주동의 부분 특화 디자인(ex. 코어 등)], 저층부 석재, 동출입구 등이 공사 중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조명계획 시 인근세대의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음</li> <li>· 각 동 1층 피로티 또는 1층 인근에는 제연휨통의 급배기구가 설치되어 있어 소음, 냄새, 매연,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음</li> <li>· 옥상 난간대 등을 포함한 각종 옥상 시설물에 대해 강풍발생시 소음 발생할 수 있음</li> <li>· 일부 동 옥상층에 지하층(지하주차장) 이동통신 및 커뮤니티 시설 공동 이용을 위한 인프라(안테나)가 설치될 수 있음</li> </ul>
부대복리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접근거리 및 지하주차장을 통한 접근여부 등이 동별로 상이함 (일부 동은 지하주차장을 통해 접근이 불가할 수 있음)</li> <li>· 부대복리시설의 시설 및 마감재 등은 "시행자"의 요청으로 카탈로그와 다르게 변경될 수 있음</li> <li>·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상품 및 기능, 구조, 성능 개선, 배관간섭 등으로 인해 평면 레이아웃, 각 실의 기능, 입면, 단면, 천장고, 창호재질 및 색상, 창호 및 유리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입면 및 출입구 등 부대복리시설의 차별화 디자인(형태, 색채, 줄눈, 마감재, 조명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자"의 설계변경에 따라 스트라다 디자인(문주 특화 디자인)이 적용 되는 등 공사 중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음</li> <li>·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사업시행인가 도서, 견본주택, 카탈로그를 기준으로 시공예정이며, 단, 가구/기기류는 불박이형 가구 및 운동기기만 제공</li> <li>· 부대복리시설에 인접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 후 부대복리시설의 종류에 따라 음식 냄새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3 단지 305 동 주변 북측 출입구 #1 경비실 인근에 가스정압실이 설치됨</li> <li>· 각 단지별 어린이집의 지붕에는 태양열 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인근 동에서는 조망권, 미관저해,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01 동, 104 동, 109 동, 205 동, 209 동, 304 동, 305 동(인근동 포함)]</li> <li>· 커뮤니티 상부 실외기실 설치로 인해 하부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 될 수 있음</li> </ul>
지하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 계획(주차구획별 주차대수 비율 포함)은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음</li> <li>· 아파트 계단실과 지하주차장이 접하는 개소 수는 각 세대별로 상이함</li> <li>· 지하주차장의 일부는 PC 구조로 적용될 수 있으며, 부재의 크기, 형태, 특성 등은 부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 높이,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li> <li>· 각 단지별, 동별 특성에 따라 주차대수는 상이함 (1 단지 주차대수 : 1,594 대, 2 단지 주차대수 : 1,797 대, 3 단지 주차대수 : 1,523 대, ※각 단지별 주차대수는 근린생활시설의 주차대수는 제외, 전기차 충전공간을 포함한 대수임)</li> <li>· 외기에 면한 주차장 벽체 마감은 블록공간 쌓기 또는 PVC 재질 판별 등 적합한 성능의 재료로 변경될 수 있음</li> <li>·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위치는 동별 배치를 고려하여 변경 될 수 있고, 관련 법령 및 인허가권자와의 협의 등에 따라 충전시설 설치면 만큼 주차대수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발생함</li> <li>· 택배보관함의 위치와 규모 등은 대관 인허가과정 및 현장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li> <li>· 단지별 지하 3 층 또는 지하 5 층 일부 구간에 무인택배함을 설치 예정이며, 동별·코아별로 무인택배함에 접근성이 상이함</li> <li>· 다음 동의 저층 세대는 지하주차장 진입로 및 차량통과 등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 (102 동, 106 동, 111 동, 201 동, 205 동 206 동, 207 동, 210 동, 304 동, 305 동, 309 동, 310 동)</li> <li>· 세대창고는 지하층 공간에 설치되며 각 세대별 배정은 입주 후 관리주체 주관으로 시행예정</li> <li>· 지하주차장의 PC 공법 적용 범위는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PC 로 설치되는 부위의 천장은 별도 마감을 하지 않음</li> <li>·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기동 및 소화전 등의 시설물에 의해 주차 후 차량의 문 개폐 시 간섭 등이 발생하여 이용에 불편할 수 있음</li> <li>· 단지 내외부 에 설치되는 차량 경사로의 길이와 폭 등은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시행자"의 인·허가 결과에 따름</li> </ul>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내 조경공간에 설치되는 휴게시설 및 의자, 테이블 등 가구류는 입주개시 후 관리주체에서 관리하며 임의 이동이 불가함</li> <li>· 단지에는 수경시설(생태계류, 생태연못 등)이 조성 예정이며, 관리 여하에 따라 녹조, 벌레,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단지조경 및 외부 시설물의 형태 및 모양 등은 현장 실시공 시 카탈로그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으며, 생태면적률, 조경률은 인허가 및 시공시 법적범위 내에서 증감될 수 있음</li> <li>· 단지 내의 조경공간, 식재수종, 비상차량동선 및 산책로 선형,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위치 및 크기, 수경시설, 조경시설물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 단지 내외부 바닥 포장 및 외부공간, 식재계획, 시설물계획, 레벨, 경사로 계획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li> <li>· 자전거 보관소 계획은 대관인허가,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위치, 규모 및 개소 수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단지 내 조경(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은 적용 위치·구간·면적·자재 등 대관 인허가과정 및 현장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li> <li>· 주동 및 부대복리시설, 상가 등의 옥상에 녹화 및 조경시설은 실시공 시 설치유무 및 위치와 면적,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단지별 통학차량 주차공간은 실시공 시 위치이동, 조경 계획 변경 및 시설물등이 추가 시공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인근 세대에 소음등의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음</li> </ul>
	주출입구 / 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출입구(문주), 보행자출입구, 경비실 인접세대는 조망, 일조가 간섭될 수 있음</li> <li>· 주출입구 경비실 및 주차차단기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 측량결과 등을 위하여 이동하거나 변경 또는 추가 될 수 있음</li> <li>· 단지 출입구 및 경비실의 차별화 디자인(형태, 색채, 줄눈, 마감재, 조명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자"의 설계변경에 따라 스트라다 디자인(문주 특화 디자인)이 적용되는 등 공사 중 추가 또는 변경 될 수 있음</li> </ul>
	상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되어있지 않음(상가의 진입구와 주차장은 공동주택단지와 별도로 계획됨)</li> <li>· 상가에 인접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 후 입점상가의 업종에 따라 음식 조리시 냄새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가의 실외기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105 동, 106 동, 201 동, 202 동, 204 동, 301 동, 307 동 (인근동 포함)]</li> <li>· 단지내 상가의 창호, 외부입면,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공동주택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음</li> <li>· 입면 및 출입구 등 상가 외관의 차별화 디자인(형태, 색채, 줄눈, 마감재, 조명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자"의 설계변경에 따라 스트라다 디자인(일부 상가 입면 특화 디자인)이 적용되는 등 공사 중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음</li> </ul>
단위 세대 관련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한 타입이라도 동, 호수에 따라 벽체두께, 창호크기, 발코니 크기가 상이할 수 있음</li> <li>· 골조와 조적/건식벽체 접합부 등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균열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음</li> <li>· 세대 내 안목치수 산정 시 옵션마감재, 가구, 걸레받이, 천장물딩 등은 포함되지 않음 (기본형 평면으로 적용)</li> <li>· 세대 내 우물천장 크기, 높이, 형태, 조명 등은 변경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 내 건식벽체 석고보드 구성은 부위별로 상이함</li> <li>· 이웃 세대(좌우/상하부) 확장여부에 따라 바닥, 천장, 벽체 등이 변경되거나 돌출될 수 있음</li> <li>· 상부세대 욕실배관이 하부세대 욕실 천장속에 설치되며, 상부세대 욕실배관 보수 시 하부세대는 협조하여야 함</li> <li>· 단위세대 침실이 승강로에 면하는 경우 승강기 운행 중 진동/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단위세대 내부 비내력벽체의 재질은 변경(골조,조적,건식벽체 등)될 수 있음</li> <li>·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출입문의 설치 위치, 폭, 높이, 형태, 열림방향, 디테일은 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li> <li>· 외부창호 프레임 및 유리 색상은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li> <li>· 상부 세대 비확장 시 하부 세대의 우물천장 깊이, 커튼박스 깊이 등박스의 크기 및 깊이 등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동,호수에 따라 카탈로그 또는 견본주택과 평면이 좌우대칭되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아트월, 소파 설치위치, 외부조망 등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욕실 출입구 단차는 배수를 위한 바닥구배 시공으로 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li> <li>· 현관, 욕실, 발코니 등과 실내의 바닥 단차 치수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li> <li>· 우물천장, 등박스, 커튼박스 위치, 크기,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음</li> <li>· 세대 내 욕실 천장고는 실 시공 시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욕실 벽과 바닥의 타일 나누기는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li> <li>· 불박이 가구(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 및 욕실거울, 욕조, 위생도기류 등과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벽지, 마루, 타일 등의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주방가구 하부에는 난방배관이 시공되지 않음</li> <li>· 천장 속에 설치되는 설비, 골조 등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천장 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천장면에 설치되는 전등 등의 위치 및 개소는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li> <li>· 본 공사 시 세대 내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 폭이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변경될 수 있음</li> <li>· 세대 내 설치되는 가구류는 실 시공 시 크기, 위치, 디자인, 디테일 등이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li> <li>· 인접 세대 및 해당 세대 내부 확장 여부와 주동의 조합에 따라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및 침실, 기타 일부 구간의 벽체 및 기둥 일부가 돌출되고 마감 및 드레스룸 가구 구성이 상이할 수 있음</li> <li>· 같은 평형대의 세대일지라도 세대별 위치에 따라 측벽 및 세대간벽의 두께, 구성 등이 달라질 수 있음</li> <li>· 공동주택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안방을 포함한 세대 침실 및 욕실문의 도어록 사양은 키가 없는 Type 임</li> <li>· 동일한 타입의 단위세대에서 측세대 / 중간세대 비확장 발코니 면적은 법규에 따른 면적산정으로 동일하나, 측벽에 면한 발코니는 관련법규에 따른 벽체 기준면에 따라 실 사용 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li> <li>· 입주자가 개별로 가전 제품 구매 후 설치 시 설치 전 세대 내부 설치 공간 확보 여부에 대해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대형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설치가 불가할 수 있음</li> <li>· 석재 및 타일, 시트판넬의 나누기는 본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달라질 수 있음</li> <li>· 주방창호 사이즈와 형태에 따라 커튼박스 유무와 사이즈, 가구 형태는 변경될 수 있음</li> <li>·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드레스룸 가구, 주방가구 및 발코니 선반의 길이 및 구성, 위치는 상이할 수 있음</li> <li>· 복도 및 거실 아트월 설치 여부 및 위치는 평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세부 위치는 모형을 참조하기 바람</li> <li>· 현관 신발장의 경우 세대 통합 분전반 설치공간 확보를 위해 동·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신발장 구성 및 설치 방향이 상이할 수 있음</li> <li>· 세대의 천장고는 2층 이상의 84형 이하 세대 2.3m, 97형 이상 세대는 2.35m로 계획되어 있으며, 1층 세대(복층형 포함)는 2.4m로 계획되어 있음(창호크기 및 설치위치는 기준중과 동일함)</li> <li>· 세대 현관문은 방화 성능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일부 형태 및 디테일이 달라질 수 있음</li> <li>· 세대별 옵션은 확장 기준으로 작성되어 비확장 시 제공이 불가할 수 있으며, 타입, 평면별로 제공 유무 및 형태가 상이하므로 견본주택 및 카다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람</li> <li>· 가구류(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 의 벽, 바닥, 천장 등에는 벽지, 마루, 타일 등의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li> <li>· 모형과 CG 에 표현된 마감재는 실제 색상과 재질을 반영한것이 아니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li> <li>· 세탁실에 건조기 설치 시 세대 타입별로 여건에 따라 세탁실 선반과 간섭되어 선반사용이 불가할 수 있음</li> <li>· 132형의 특화층(복층형 하부층)에는 싱크대 및 수전 등 별도의 주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음</li> </ul>
발코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코니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긴급상황시 피난동선으로 활용되므로, 물건 등을 적치하지 않고 피난 동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함</li> <li>· 발코니에는 결로 방지를 위한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동절기 수도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li> <li>· 유상옵션 상품 선택에 따라 외부창호가 설치되는 비확장 발코니 외벽에는 결로방지용 단열재가 설치됨(외부창호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결로방지용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음-실외기 설치공간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탁실에 건조기 설치 시 창호 개폐 및 채광이 어려울 수 있음</li> <li>· 실외기 및 하향식 피난구 설치공간은 계획된 용도 외의 사용이 불가하며, 기타 적재공간 등으로 사용할 경우 장비성능(소음, 진동) 이상 및 효율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음. 또한 해당부위는 비난방 구간으로, 결로 등에 의한 적재물 손상이 발생될 수 있음</li> <li>· 실외기용 그릴 설치 부분의 난간턱, 수벽의 높이 및 그릴의 재질, 사양 및 디자인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li> <li>·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 내부 마감이 상이할 수 있으며, 발코니 외부 창호가 설치되지 않음</li> <li>· 수전이 계획되지 않은 발코니는 배수구 및 선홈통 등이 설치되지 않음</li> <li>·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 배수구, 선홈통, 환기구, 바닥단차 등은 변경될 수 있음</li> <li>· 실외기 및 하향식 피난구 설치공간의 크기 및 디자인은 평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출입문의 유효폭이 줄어들 수 있음</li> <li>· 관련법규에 따라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별도의 대피공간이 설치되지 않으며, 실외기 및 하향식 피난구 설치공간으로의 출입문은 전층 방화성능이 없는 철제문이 설치됨(39 타입 제외)</li> <li>· 일부 발코니에는 입면계획에 따른 장식물 또는 구조물이 부착될 수 있음</li> <li>· 발코니 확장 부위 벽체 등 내부 단열재는 마감두께 확보 및 품질향상의 이유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li> <li>· 실외기용 그릴이 환기구 일체형으로 설치되는 경우 환기구의 위치 및 형태는 시공성 및 성능 개선을 위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li> <li>· 하향식 피난구의 크기 및 위치는 현장시공시 법적인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li> <li>· 발코니 확장 선택시 안방앞 발코니는 법규에 맞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해 발코니 천정 높이 변경을 포함한 설계변경이 진행될 예정임</li> </ul>
창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벽 마감재의 변경에 따라 세대 창호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외부창호는 풍압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타입별, 층별, 위치별로 디자인과 사양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li> <li>· 공동주택 외부창호에 설치되는 유리종류, 하드웨어, 창틀재질, 크기, 색상, 난간대 재질/높이 등은 실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코니 확장 시 마감재 설치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li> <li>· 본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18조 4항(21.1.12 개정시행)으로 인하여 세대별 국기봉 꽃이 장치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기봉 꽃이 장치는 각 동 출입구에 1개소 씩 설치 예정임. 단, 현장 여건 및 인허가청과의 협의에 따라 설치위치가 변경 또는 삭제될 수 있음</li> <li>· 같은 평형대의 세대일지라도 현관문의 열림방향이 다를 수 있음</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는 견본 제품이며, 본 공사 시 동등사양의 창호로 변경될 수 있음</li> <li>·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카탈로그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li> <li>· 공용부 설치 창호의 경우 세대와 인접 시 망입유리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일부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거나 고정형 창으로 설치됨</li> <li>· 계단실 창은 고정형으로 설치되고, 환기를 위해 코아별로 창호 사이즈를 고려하여 일부 오픈형(자동폐쇄장치 설치) 창호가 설치될 수 있으며, 계단실 최상층에는 배연창이 설치될 수 있음</li> </ul>
전기/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 내 완강기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li> <li>· 세대 내 통합분전반 설치 위치 및 신발장 가구 내 선반의 배치는 세대별로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음(분전반 주변 가연물 적재 금지)</li> <li>· 세탁기, 건조기 등 입주자의 물품 배치에 따라 보일러 점검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 등을 이동해야 할 수 있음</li> <li>· 세대 1~3층(필로티포함) 및 최상층에 한하여 동체감지기가 설치됨</li> <li>· 식탁등의 경우 인테리어 설계에 따라 식탁 배치 후 그 상부에 설치되며 위치변경 등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li> <li>· 래미안 IoT 플랫폼 서비스는 세대 내 입주민의 무선인터넷(고객 별도 설치) 사용 시 가능한 서비스로 인터넷 미사용 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함 (※래미안 IoT 플랫폼 서비스란 IoT 홈패드, IoT 도어락을 통한 방문자 영상통화/비밀번호 제공, 출입이력 조회 기능 및 가전사/포털사/이통사의 AI 스피커, App, 챗봇과 연계된 홈네트워크 연동서비스)</li> <li>· 래미안 IoT 플랫폼 서비스와 연동되는 가전사/포털사/이통사의 상품 및 서비스는 입주민이 별도 구매 후 활용이 가능한 상품으로 인터넷 미사용 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며 해당 업체의 정책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및 제공기간은 변경 또는 미제공 될 수 있음</li> <li>· 래미안 IoT 플랫폼 서비스는 성능 개선 또는 입주 시점의 기술 변화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li> <li>· 확장 및 비확장, 옵션에 따라 배선기구 및 전등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세대 내 스위치, 콘센트, 조명기구류는 위치, 사양, 개소 등이 변경되거나 타입별로 다를 수 있음</li> <li>· 최상층 세대의 전기 배관/배선은 이중천장 내 노출 시공됨</li> <li>· 전기쿠팡, 전기레인지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으며, 단 전기용량 3.3kW 초과 전기쿠팡, 전기레인지어를 설치할 경우 입주자 별도 전기공사 필요함</li> <li>· "시행자"의 설계 변경 등에 따라 일부 공동주택 옥상에 경관조명 위치, 개소,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조명 점등 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고정 IP(전용회선) 사용으로 입주 후 관리비용이 발생됨</li> <li>•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환기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함</li> <li>• 세대 내 설치되는 대기전력차단장치(콘센트 등) 및 LED조명기구 적용 비율은 인허가 사항에 따라 적용 예정임</li> <li>• 위생기구류(수전, 도기 등), 액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등), 기타 마감자재(에어컨, 보일러, 쿡탑, 가스미터기 및 배관, 배수구, 스프링클러 헤드, 환기구, 점검구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음 115형 부부욕실에는 양변기 주위에 바닥 배수구가 추가 설치될 수 있음</li> <li>• 일부 세대 현관문은 차압측정공이 설치될 수 있음</li> <li>• 유상옵선 계약에 따라 설치되는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실내기, 실외기)은 본 공사에 설치되는 모델이며, 해당 모델 단종시에는 동등 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됨. 또한, 에어컨(실내기, 실외기)의 수량 및 냉방 용량은 세대별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li> </ul>
--	---

■ 사이버 모델하우스 : 래미안 포레스티지 홈페이지(www.raemian.co.kr)

■ 견본주택 위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 182 번길 3

■ 분양문의 : 051-867-4043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래미안 포레스티지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